

학교급식법 개정 10년, 앞으로 10년을 위한 준비

GMO없는 안전급식. 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 토론회



◇일시 : 2016년 8월16일 오후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김현권 남인순 도종환 민홍철 신동근 안민석 유은혜 정춘숙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정의당] 노회찬 윤소하 의원

○ 친환경무상급식플뿌리국민연대

토론회 일정

내 용

개 회
국민의례
내빈 소개
인사말 및 축사

○ 토론회 좌장: 윤병선 (건국대 교수)

[발표 1]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 성과와 과제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건국대 겸임교수)

[발표 2]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방안

최재관 (친환경무상급식풀리국민연대 정책위원)

[발표 3]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을 통한 안전급식 방안

김오열 (충남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처장)

[토론 1] 진현극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대표)

[토론 2]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자유토론

폐회

자료 차례

[인 사 말]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플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4

[축 사]

정세균 국회의장 6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7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8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9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11

[발 표 문]

[발표 1]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 성과와 과제 12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건국대 겸임교수)

[발표 2]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방안 36
최재관 (친환경무상급식플뿌리국민연대 정책위원)

[발표 3]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을 통한 안전급식 방안 48
김오열 (충남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처장)

[토 론 문]

진현국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대표) 72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73

인사말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플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아이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의 미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기본에는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후 살아 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먹고, 자고, 놀고, 함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급식은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국가의 책무로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초·중·고 학생의 약 76%이상이 무상급식 시대에 살고 있으며, 점차 친환경 급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무상급식의 국가 책무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은 진전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친환경무상급식의 실시를 위하여 시급히 중앙정부의 재정 참여를 법 개정을 통하여 명시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재정의 50%를 중앙정부가 분담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제출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제대로 검토도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미룬 상태에서, 경남 홍준표 도지사에 의한 친환경무상급식 파탄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게 학부모·도민의 눈물겨운 투쟁은, 마침내 친환경무상급식을 되찾았지만 아직도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남도민 60만 명 이상은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달라는 국회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2016년 올해는 지난 2006년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1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직영급식으로 전환,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공시스템 도입 등 많은 변화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작입니다.

특히, 세계 1위 식용 GMO(유전자변형식품) 수입국가 한국에서 “GMO”에 대한 불안은 급증되고 있습니다. 이미 가까운 대만에서는 위생법을 통하여 학교급식에서 GMO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하게 GMO 없는 안전한 급식을 만들기 위한 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GMO 완

전 표시제가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최근 대전에서 부실급식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학교와 담당자의 책임 뿐 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현행 전자조달시스템의 폐해는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공조달시스템의 도입 없이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제도 개선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는 “모든 사람에게서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끼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20대 국회가 국민의 희망을 담아 출범한 민생희망의 국회가 되려면, “학교급식법” 개정을 최우선적인 입법 과제로 채택하길 바랍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으로 시작하여 우리 농업의 과제, 지방자치의 과제, 거버넌스 등 많은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발전시켜내는 중요한 기제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꼭 실현되길 바라며,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만들어 주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김현권, 남인순, 도종환, 민홍철, 신동근, 안민석, 유은혜, 정춘숙, 국민의당 송기석, 정의당 노회찬, 윤소하 등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꺼이 좌장을 맡아주신 윤병선 건국대 교수, 발제를 맡아주신 장경호 박사를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축사

정세균
국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우선, 「GMO 없는 안전급식·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토론회」의 개최를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해주신 의원님들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도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학교급식과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제도 개선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급식법 개정 10년, 앞으로 10년을 위한 준비’를 주제로 한 이 토론회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제까지 추진된 학교급식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과 친환경무상급식의 발전을 위한 단단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국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고 행복한 밥을, 농민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주신 윤병선 교수님과 발제자 여러분, 그리고 패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뜻 깊은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16일
국회의장 정세균

축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입니다.

〈GMO 없는 안전급식·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 깊은 토론회를 준비하신 친환경무상급식폴뿌리국민연대 관계자 여러분과 열 두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대한민국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밥’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육체적 건강 뿐 아니라 삶의 기본권인 ‘행복’을 지켜주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아이들 밥그릇’을 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밥을 지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점과 개선점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으로 뜻 깊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이후 1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나아갈 방향, 보완해야 할 점 등을 고민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련 단체 뿐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공감대를 다시 한 번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교류와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서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의미 있고 생산적인 의견이 수렴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박지원입니다.

국민의당은 미래를 준비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에 의해 탄생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래와 과거를 가르는 시대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낡은 체제, 낡은 시스템과 결별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낡은 과거로 다시 퇴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3항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 기관인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무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국민의당은 20대 총선 공약으로 수업료 외에 기본 학교급식비, 체험활동비, 물품비 등을 일체 지원하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교실 이용률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문제 해결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준비의 시작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2030년에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2060년에는 역삼각형의 인구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대한민국의 존폐에 대한 문제로 진보나 보수, 여당과 야당의 문제로 나눠 정쟁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급식문제를 시작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나라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복지 문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이번 안전급식·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토론회가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진지한 시작 되었으면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토론회에 임해 아이들에게 행복한 밥을, 농민에게는 희망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축사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노회찬입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한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사이 친환경 무상급식은 양적인 측면에서 전국의 초·중·고로 확산되었고,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의 영양관리와 올바른 식생활 교육, 그리고 로컬푸드 운동의 확산 등 안전한 우리 농산물 소비 에도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지난 10여년 동안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를 이루어내신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농민단체 등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시·도민 여러분!

이제 학교급식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의 일환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친환경무상급식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친환경무상급식의 양적 질적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학교의 무상의무급식이 후퇴하는 등 학교급식 정책에 혼란을 야기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개혁해야 합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지만, 홍준표 지사의 취임 이후 무상의무급식이 중단되었고, 그 결과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식운영비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50% 이상 부담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적 수준을 높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 이를 위해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 표시제도 개선을 전제로 GM(유전자변형) 농수축산물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학교급식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해 학교급식 식재료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조달, 학교급식과 지역 농산물 생산의 연계 등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식생활 교육 확대 등에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학교급식법의 개정논의 과정에서 오로지 우리 아이들 모두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자 한다는 정책목표만을 생각한다면 여야가 함께 조속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저 또한 그러한 논의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주최하게 된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박인숙, 진현극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대표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사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유성엽입니다.

‘GMO 없는 안전급식·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의 마련을 위해 수고해 주신 국회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관계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생활 주변의 모든 요소들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먹거리’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농업과학기술의 발달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재배를 가능케 했습니다. 농업생산성 향상, 식량자원 확보 등을 이유로 관련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면서 GMO는 어느새 우리 먹거리의 일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GMO는 총 1000만 톤에 이릅니다. 그 가운데 식용 GMO 수입량은 220만 톤으로 세계 1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직접 180여 종의 GMO를 개발하고 있고, 지역 마을 주민들과 농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는 전국 7개 지역에서 벼 등 일부 품목을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GMO의 안전성에 대한 어떤 입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에 이어 생산까지 확대된다면 우리 식탁은 더욱 불안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묵과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른 먹거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나라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아이들의 권리는 우리 어른들이 책임지고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안전한 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실시 비율은 97년 58.4%에서 2015년 100%로 확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루 1회 이상 학교급식을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 조달되는 농산물은 확실한 품질과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열리는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GMO로부터 안전한 급식 환경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모아진 지혜가 위기에 처한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GMO 없는 안전급식·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발표문-1

학교급식의 성과와 과제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

1. 들어가며

-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및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학교급식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으며, 특히 2010년 이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단기간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빠르게 확대되어 왔음
- 2011년 서울시의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2014년 지방선거에서의 농약급식 논란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지침 변경 및 2015년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등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친환경 무상급식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온존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 및 학교급식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고, 그 피해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전가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음
- 이 글은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및 2010년 지방선거 이후 학교급식의 진전이 이루어낸 성과를 고찰함으로써 친환경 무상급식이 미래지향적 정책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아울러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주요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2. 학교급식의 진전 과정

1) 학교급식 현황

- 2015년 기준으로 전국 11,698개교 모두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의 99.9%에 해당하는 6,142천명에게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있음
 - 참고로 1997년 전체 학교의 58.4% 정도에서만 학교급식을 실시하였고, 전체 학생의 38.5%에게 급식을 제공하였음.

표 1. 학교급식 현황 (교육부, 2016.2.28. 기준)

| 구 분 | 학교수(교) | | | 학생수(천명) | | |
|------|--------|--------|-----|---------|-------|------|
| | 전체 | 급식 | % | 전체 | 급식 | % |
| 초등학교 | 5,978 | 5,978 | 100 | 2,731 | 2,731 | 99.9 |
| 중 학교 | 3,208 | 3,208 | 100 | 1,589 | 1,588 | 99.9 |
| 고등학교 | 2,344 | 2,344 | 100 | 1,806 | 1,799 | 99.6 |
| 특수학교 | 168 | 168 | 100 | 25 | 24 | 99.2 |
| 합 계 | 11,698 | 11,698 | 100 | 6,151 | 6,142 | 99.9 |

2) 직영급식의 확대

-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 직영급식이 확대되고, 위탁급식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였는데, 2015년 현재 전체 학교의 약 97.9%가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위탁급식은 2.1%에 불과함.
 - 2005년 위탁급식이 1,655개교, 15.4%였는데, 2015년에는 234개교, 2.1%만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다만 고교 위탁급식 비중이 9.1%로 다소 높음

표 2. 직영급식과 위탁급식 현황 (교육부, 2016.2.28 기준)

| 구 분 | 운영형태(교) | |
|------|--------------|----------|
| | 직영(%) | 위탁(%) |
| 초등학교 | 5,977(99.9) | 1(0.1) |
| 중 학교 | 3,182(99.2) | 26(0.8) |
| 고등학교 | 2,131(90.9) | 213(9.1) |
| 특수학교 | 166(98.8) | 2(1.2) |
| 합 계 | 11,456(97.9) | 242(2.1) |

3) 무상급식의 확대

-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2011년부터 무상급식이 빠르게 확대되어 왔는데, 2010년 전체 초·중·고교의 23.7%인 2,657개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으나 2014년에는 72.7%인 8,351개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었는데, 2015년에는 7,805개교, 67.4%로 감소하였음
 - 2015년 무상급식 비율이 감소한 원인은 경남도가 무상급식 재정지원을 중단함으로써 727개교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되었기 때문임
 - 2015년 무상급식 인원은 전체 학생 6,142천명의 67.6%인 4,149천명임
- 초등학교의 경우 약 87.3%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고, 중학교의 경우 약 72.2%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학교가 약 10.1%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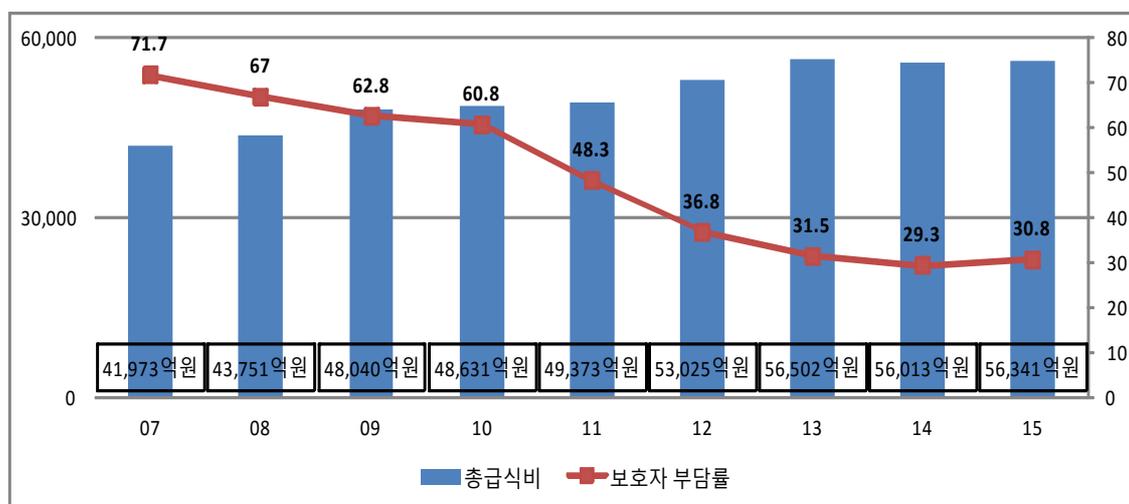
표 3. 무상급식의 확대

| 연도 | 무상급식 현황 | | | | | | | | | | | |
|------|------------|--------------|--------|------------|--------------|--------|------------|--------------|--------|------------|--------------|--------|
| | 초등학교 | | | 중학교 | | | 고등학교 | | | 각급 학교 합계 | | |
| | 전체 학교수 (개) | 무상급식 학교수 (개) | 비율 (%) | 전체 학교수 (개) | 무상급식 학교수 (개) | 비율 (%) | 전체 학교수 (개) | 무상급식 학교수 (개) | 비율 (%) | 전체 학교수 (개) | 무상급식 학교수 (개) | 비율 (%) |
| 2009 | 5,852 | 1,427 | 24.4 | 3,110 | 304 | 9.8 | 2,234 | 81 | 3.6 | 11,196 | 1,812 | 16.2 |
| 2010 | 5,845 | 2,123 | 36.3 | 3,128 | 427 | 13.7 | 2,255 | 107 | 4.7 | 11,228 | 2,657 | 23.7 |
| 2011 | 5,893 | 4,703 | 79.8 | 3,150 | 803 | 25.5 | 2,286 | 205 | 9.0 | 11,329 | 5,711 | 50.4 |
| 2013 | 5,942 | 5,622 | 94.6 | 3,180 | 2,393 | 75.3 | 2,326 | 300 | 12.9 | 11,448 | 8,315 | 72.6 |
| 2014 | 5,960 | 5,607 | 94.1 | 3,190 | 2,433 | 76.3 | 2,333 | 311 | 13.3 | 11,483 | 8,351 | 72.7 |
| 2015 | 6,009 | 5,247 | 87.3 | 3,212 | 2,320 | 72.2 | 2,352 | 238 | 10.1 | 11,573 | 7,805 | 67.4 |

※ 자료 : 김춘진 의원실(2015.3.2.) / 특수학교 현황 제외

- 무상급식의 확대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였는데, 2010년에는 급식비의 약 60.8%를 학부모가 부담하였으나 2015년에는 30.8%를 부담하고 있음
 - 2010년 총 급식비 4조8,631억 원 가운데 2조9,567억 원을 학부모가 부담하였으나 2015년에는 총 급식비 5조6,341억 원 가운데 1조7,318억 원을 학부모가 부담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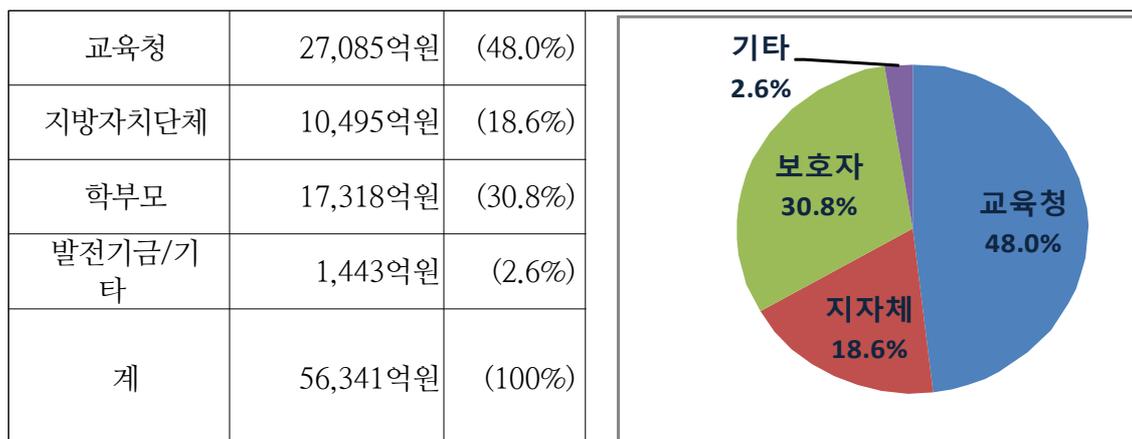
그림 1. 급식비와 학부모 부담률



※ 자료 : 교육부, 2015 학교급식 현황 (2016.2.28. 기준)

- 현재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부모, 기타 등이 부담하고 있는데, 2015년의 경우 총 급식비 가운데 교육청이 48.0%, 지방자치단체가 18.6%, 학부모가 30.8%, 기타 2.6% 등을 부담하고 있음

표 4. 2015년 급식비 부담



※ 자료 : 교육부, 2015 학교급식 현황을 기초로 재구성

- 전남, 충남, 서울, 광주, 세종, 제주, 강원, 충북, 전북 등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부담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무상급식 확대된 반면 경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인천 등은 학부모의 부담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무상급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도청의 부담률이 낮고,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5. 2015년 시도별 급식비 부담 (단위 : 백만원)

| 시도 | 교육청 | 지자체 | 학부모 | 발전기금등 | 합계 |
|----|----------------------|----------------------|----------------------|-------------------|---------------------|
| 서울 | 406,345 (47.7%) | 231,442 (27.2%) | 212,914 (25.0%) | 1,191 (0.1%) | 851,892 (100%) |
| 부산 | 158,807 (52.3%) | 11,557 (3.8%) | 132,540 (43.7%) | 624 (0.2%) | 303,528 (100%) |
| 대구 | 125,225 (49.9%) | 15,995 (6.4%) | 96,674 (38.6%) | 12,868 (5.1%) | 250,762 (100%) |
| 인천 | 119,847 (40.6%) | 43,397 (14.7%) | 131,339 (44.5%) | 754 (0.2%) | 295,337 (100%) |
| 광주 | 93,280 (45.5%) | 43,802 (21.3%) | 59,657 (29.1%) | 8,443 (4.1%) | 205,182 (100%) |
| 대전 | 56,122 (31.4%) | 35,800 (20.1%) | 86,108 (48.2%) | 431 (0.3%) | 178,461 (100%) |
| 울산 | 62,905 (48.8%) | 5,765 (4.5%) | 59,334 (46.0%) | 887 (0.7%) | 128,891 (100%) |
| 세종 | 18,391 (53.8%) | 7,957 (23.3%) | 5,620 (16.4%) | 2,212 (6.5%) | 34,180 (100%) |
| 경기 | 646,613 (48.1%) | 287,988 (21.4%) | 355,761 (26.4%) | 54,820 (4.1%) | 1,345,182 (100%) |
| 강원 | 108,025 (57.0%) | 41,697 (22.0%) | 39,593 (20.9%) | 108 (0.1%) | 189,423 (100%) |
| 충북 | 107,021 (48.1%) | 47,084 (21.2%) | 67,661 (30.4%) | 509 (0.3%) | 222,275 (100%) |
| 충남 | 135,994 (43.9%) | 84,699 (27.4%) | 72,366 (23.4%) | 16,526 (5.3%) | 309,585 (100%) |
| 전북 | 133,678 (54.7%) | 45,967 (18.8%) | 50,047 (20.5%) | 14,604 (6.0%) | 244,296 (100%) |
| 전남 | 121,510 (50.5%) | 81,085 (33.7%) | 17,027 (7.1%) | 21,014 (8.7%) | 240,636 (100%) |
| 경북 | 146,329 (41.5%) | 41,162 (11.6%) | 162,256 (45.9%) | 3,239 (1.0%) | 352,986 (100%) |
| 경남 | 217,672 (54.9%) | 5,438 (1.4%) | 172,611 (43.5%) | 779 (0.2%) | 396,500 (100%) |
| 제주 | 50,768 (59.7%) | 18,641 (21.9%) | 10,276 (12.1%) | 5,390 (6.3%) | 85,075 (100%) |
| 합계 | 2,708,532 (48.0%) | 1,049,476 (18.6%) | 1,731,784 (30.8%) | 144,399 (2.6%) | 5,634,191 (100%) |

※ 자료 : 교육부, 2015 학교급식 현황을 기초로 재구성

4) 친환경급식의 확대

-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이 확대되는 양적 성장과 더불어 친환경급식으로 전환되는 질적 발전도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친환경 식재료의 조달이 빠르게 증가되었으며, 특히 무상급식 대상 학교의 경우 대체로 친환경 식재료의 비중이 약 50~80%에 달하고
- 친환경 식재료의 공급 확대로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성이 향상되었는데, 쌀의 경우 무농약 이상 친환경 쌀 공급이 크게 증가하였음.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모든 학교에 자치구가 산지와 계약을 통해 무농약 이상 쌀을 제공하고 있음
- 채소류와 과일류를 비롯한 농산물의 경우에도 친환경 농산물의 식재료 공급이 무상급식 학교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해 왔고, 축산물 역시 무항생제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식재료 공급이 증가하고 있음
-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특히 방사능을 포함하여 안전성 여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수산물을 공급하는 지역도 확대되고 있음
- 원재료와 첨가물 등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품질기준을 정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가공식품만 학교에 식재료로 공급되는 경우도 확대되어 왔음.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가공식품 20~25개 품목에 대해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가공식품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는데, 2011~2012년 일부 지역에서의 시범사업 단계를 거쳐 현재는 25개 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이 방식을 시행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친환경급식으로의 질적 발전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을 비롯한 공적 조달체계의 확대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공적 조달체계는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한 시중 조달 방식에 비해 안전성 및 품질 관리에 장점이 있고,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적 조달체계의 확대는 학교급식의 안전성 및 품질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음.

표 6. 경기도교육청 가공식품 공동구매 품목과 품질기준

| | |
|-------------|--|
| <p>대상품목</p> | <p>국간장 고추장 된장 진간장 청국장 참기름 들기름 볶음참깨 들깨가루 밀가루 부침가루 튀김가루 소면 감자전분 당면 쌀조청 고춧가루 소금 매실(농축액) 현미유 설탕 토마토케첩 스위트콘 ※ 이 가운데 지역별로 20~25개 품목을 선정하여 공동구매</p> |
| <p>품질기준</p> | <p><기본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와 부재료 국내산 친환경 생산물 우선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가격 유지가 어렵거나 생산량 부족시 국내산으로 대체 - 국내생산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산 허용 • 식품첨가물 사용 원칙적으로 금지 • 유전자변형농작물 및 유전자변형 식품 금지 (Non-GMO) <p>※ 기본원칙과 아울러 품목별 세부 품질기준 별도 제시 ※ 안전성 확인을 위해 품목제조보고서, 친환경인증서, 원산지증명서, GMO검사결과, 각종 이화학(잔류농약, 중금속 등) 검사결과 등</p> |

3.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

1) 차별 없는 교육복지와 학생의 기본인권 보장

-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행되었던 저소득층 대상 급식비 지원은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들에게 낙인효과를 유발하였는데, 한창 성장하는 시기의 학생에게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주고 차별을 내면화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인권을 훼손하는 것임
- 차별 없는 교육복지의 일환으로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교현장에서 낙인효과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학생들의 기본인권을 보호하는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음
- 아울러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학생들은 차별과 낙인 보다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함양할 수 있고, 이는 학생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데 기여하는 순기능으로 작용하기도 함
-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먹거리에 대한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급식정책에 관한 선진국의 보편적인 추세와 유사하며, 먹거리 기본권을 강조하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

합하는 것임

- 친환경 무상급식이 도입된 이후 급식과 교육을 연계한 식생활교육이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의 내용에 건강뿐만 아니라 농업, 생태, 문화 등 먹거리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포함되면서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음. 이처럼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도 교육의 일부로 정착되고 있음

2) 학교급식의 안전성 및 안정성 제고

-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이후 공적 조달체계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었는데, 공적 조달체계의 가장 큰 장점은 학교급식의 안전성 관리 수준을 향상시킨 것임
- 공적 조달체계를 통해 학교에 공급되는 식재료는 사전 안전성 검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후 검사에만 의존하는 시중 조달에 비해 안전성 관리에 장점이 있음. 시중 조달의 경우 사후 샘플링 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량 식재료 공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없고, 문제 발생 이후 사후조치만 가능함

표 7. 학교급식 식재료 공적 조달체계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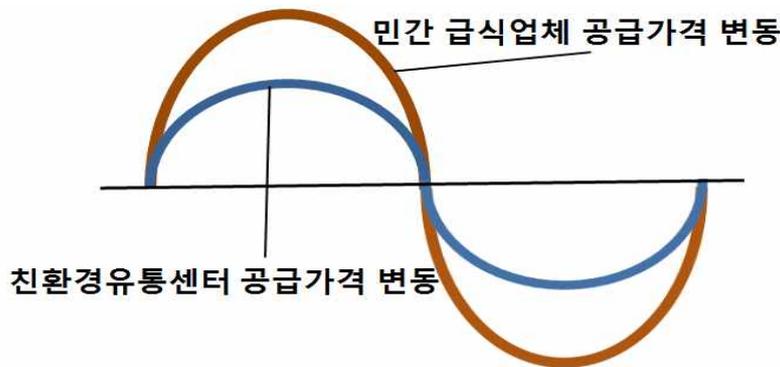
| 구 분 | | 공적 조달 | 시중 조달 |
|--------|--------|-------|-------|
| 안전성 관리 | 사전 검사 | 가 능 | 불가능 |
| | 사후 검사 | 가 능 | 가 능 |
| 안정성 유지 | 품목 | 안정적 | 불안정 |
| | 품질(품위) | 안정적 | 불안정 |
| | 물량 | 안정적 | 신축적 |
| | 가격 | 안정적 | 신축적 |

- 공적 조달체계는 시중 조달 방식에 비해 식재료 공급 물량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 가격의 불안정을 완화시켜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음
- 시중 조달의 경우 식재료 공급 물량 및 가격 측면에서 안정적 유지가 곤란함. 예를 들면 감자가 흉작으로 가격이 급등할 경우 민간 급식업체는 공급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학교는 품위가 낮은 감자를 구매하거나 다른 품목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어서 식단의 안정적 유지가 곤란함. 이처럼 농축산물의 가격 불안이 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농축산물 대신에 가공식품의 구매비율을 높이게 되는데, 이는 건강하고 균형 있는 학교급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공적 조달체계의 경우 산지와 연계성을 통해 식재료의 공급 물량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공급가격의 변동 역시 시중가격 변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임. 농축산물의 특성상 가격 변동이 상대적으로 심하고, 특히 학교에서는 가격 변동을 예측한 식단 구성 및 구매 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식단가가 정해진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공적 조달체계가 장점을 갖고 있음

그림 2. 공적 조달체계의 가격 안정성



3) 학부모의 부담경감에 따른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회경제적 효과

- 무상급식은 급식비를 공적 재원으로 부담하여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 왔는데, 특히 소득양극화의 심화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하위계층에 상대적으로 더욱 큰 효과를 가져다주었음
- 무상급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는 거시경제적 승수효과, 소득재분배의 효과, 지역경제의 순환효과,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① 거시경제적 승수효과
- 급식비 부담이 줄어든 가계는 그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데, 일반적인 거시경제 모형에

서는 정부 재정지출(G) 증가함으로써 가계 소비(C), 기업 투자(I), 고용 및 노동소득 등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 총생산 및 총소득(Y)을 증가시키게 됨

$$Y = C + I + G + X - M$$

- 급식비 지원과 같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총생산 및 총소득을 증가시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인데, 정부 재정지출의 승수효과는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에 의해 결정됨.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승수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급식비 지원으로 인한 총생산 및 총소득 증대효과가 크게 나타남

$$\text{승수효과} = 1 / (1 - \alpha) \quad (\alpha : \text{한계소비성향})$$

- 우리나라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을 계측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통계청이 발표하는 평균소비성향을 통해 가늠해 볼 수는 있음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2013~2015) 동안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은 약 73.5%로 나타남.(이는 1,000천원의 소득 가운데 평균 735천원을 소비로 지출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이를 대입하여 승수효과를 계산하면 약 3.8배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는 공적 재원으로 급식비를 지원할 경우 급식지원비의 약 3.8배 정도 총생산 및 총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한계소비성향은 이 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 승수효과는 이 보다는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② 소득재분배의 효과

-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원을 추가로 세금을 더 거두어서 충당할 경우 누진세 제도로 인해 무상급식이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무상급식으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득 일부가 중저소득층으로 이전되는 현상이 발생함
- 안현효(2010)에 의하면 증세를 통해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소득 1분위부터 7분위까지는 순보조를 받는 반면, 8분위 이상은 순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즉, 소득 7분위 이하 계층에서는 조세 부담액 보다 급식비 지원액이 더 크기 때문에 순보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임

- 한편, 위와 같은 소득재분배는 소득분위별 가치분소득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승수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8분위 이상에서는 가치분소득이 감소하여 소비지출이 감소하게 되고, 7분위 이하에서는 가치분소득이 증가하여 소비지출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거시경제 승수효과가 발생하게 됨
-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더 크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소득재분배로 고소득층의 소비 감소에 비해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고, 이 때문에 거시경제 전체로는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승수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임
- 안현효(201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3조원 규모의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소득재분배로 인한 승수효과가 발생하여 국민소득(Y)이 약 4,13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음

표 8. 무상급식의 소득재분배 효과 (단위 : 천원)

| 소득분위 | 가치분소득 | 보조(=급식비) | 조세 | 순보조 |
|------|--------|----------|----------|------------|
| 1 | 4,295 | 400 | 1.78 | 398.22 |
| 2 | 10,197 | 400 | 18.65 | 381.35 |
| 3 | 16,014 | 400 | 49.75 | 350.26 |
| 4 | 21,661 | 400 | 111.33 | 288.67 |
| 5 | 26,786 | 400 | 164.33 | 235.67 |
| 6 | 32,272 | 400 | 228.59 | 171.41 |
| 7 | 38,356 | 400 | 338.74 | 61.26 |
| 8 | 46,046 | 400 | 463.10 | - 63.10 |
| 9 | 56,741 | 400 | 741.43 | - 341.43 |
| 10 | 85,870 | 400 | 1,882.30 | - 1,482.30 |
| 계 | | 4,000 | 4,000 | 0 |

※ 자료 : 안현효(2010) / 전강수 외, 친환경 무상급식이 우리 사회 교육 및 복지정책에 끼친 효과 분석(2013)에서 재인용

③ 지역경제 순환의 효과

- 친환경 무상급식이 로컬푸드시스템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경우 지역경제의 순환에 따른 승수효과가 발생함

-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가 지역 내에서 생산-유통-가공-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원의 외부유출을 감소시키고, 지역내 순환을 증가시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낳게 되는데, 지역경제의 순환으로 지역내 소비, 투자, 고용 등이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함
- 지역경제의 순환에 따른 지역내 총생산 및 총소득이 증가하는 승수효과와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로컬푸드의 승수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가 매우 부족함. 로컬푸드의 지역경제 승수효과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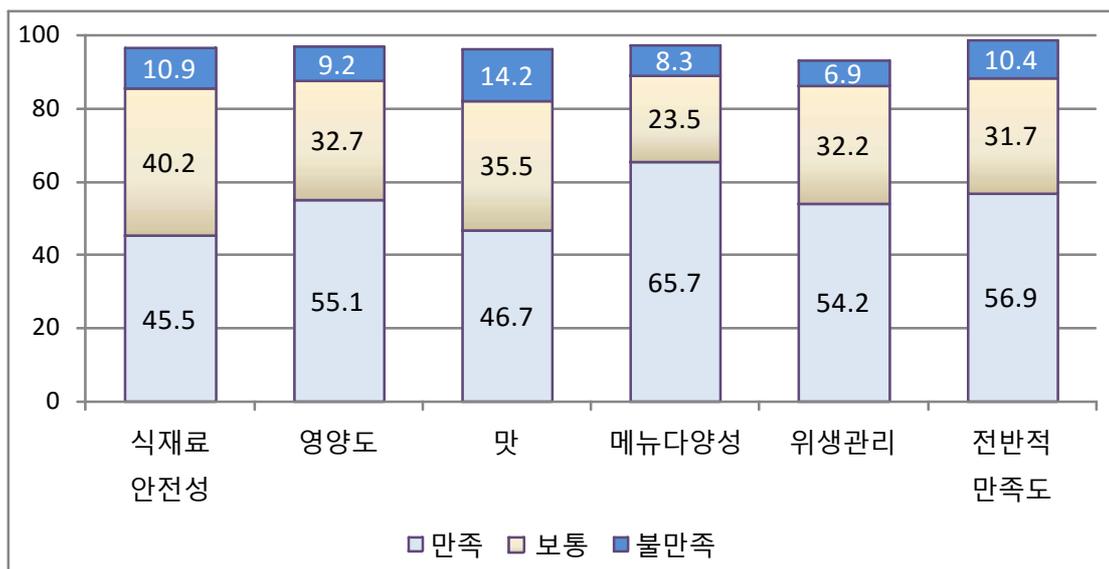
④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효과

-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는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국내 친환경농업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2010년까지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다가 최근에는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2010년까지 생협, 친환경 전문 판매장, 대형 할인마트 등을 통한 개별 가계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 수요가 친환경농업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확대를 주도하였음
-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및 경제불황이 장기화되고,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개별 가계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가 감소하였는데, 이것이 친환경농업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로 작용함
-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개별 가계의 소비 감소 효과를 사회적 수요 증가로 상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최근에는 친환경농업 기반을 유지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결국 친환경 무상급식이 친환경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효과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4)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같은 정량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직접 당사자인 학부모 및 학생의 만족도 등과 같은 정성적 성과도 주요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는 2014년 전문 조사기관에 의해 조사된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및 중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¹⁾
- 이 결과에 의하면, 친환경 무상급식 이후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긍정적 답변이 56.9%로 불만족이라는 응답 10.4%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중립적 답변이 31.7%로 나타났음
- 세부 계층별로는 전반적으로 30대 이하의 젊은층,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층에서 긍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밖의 계층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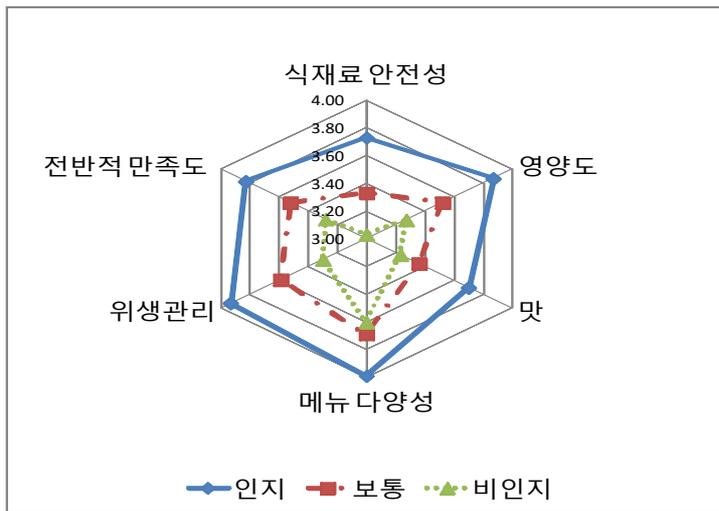
그림 3. 학부모의 전반적 만족도 및 항목별 만족, 보통, 불만족 비율 (단위 : %)



1) 한국사회학회, 「친환경 무상급식 만족도 조사결과」,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성과평가와 발전전략 연구,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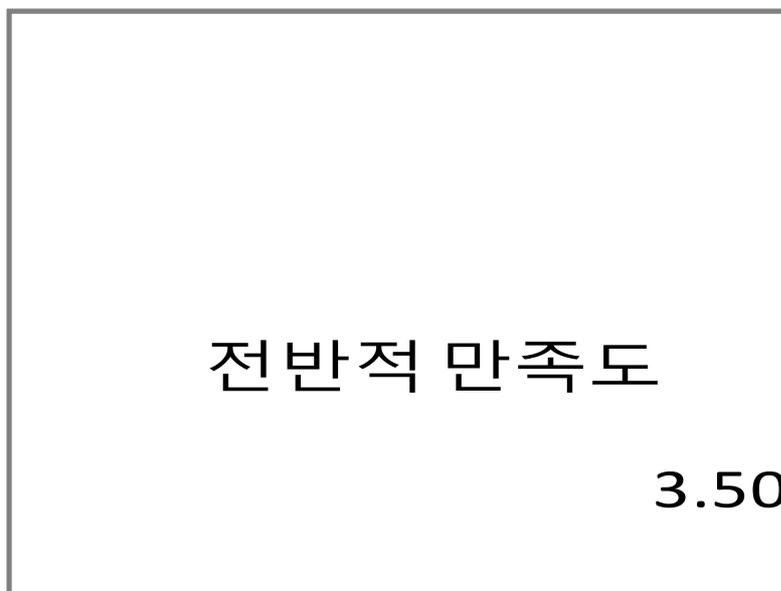
- 특이한 사항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을수록, 학교급식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긍정적 평가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4. 급식 인지 수준별 만족도



- 한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 만족도 평균이 3.5점이며, 항목별로는 맛(3.86점), 영양도(3.68점), 식재료 안전성(3.54점)의 순으로 높음. 평균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시간 (3.08점)이며 다음으로 양이 낮은 점수를 보임(3.35점).

그림 5. 중학생의 전반적 만족도 및 항목별 만족도 평균



- 중학생의 경우 학교 및 가정에서 식생활교육을 받은 학생일수록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학교에서 식생활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가정에서 식생활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맛과 영양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6. 학교에서 안전한 먹거리 교육경험 여부와 급식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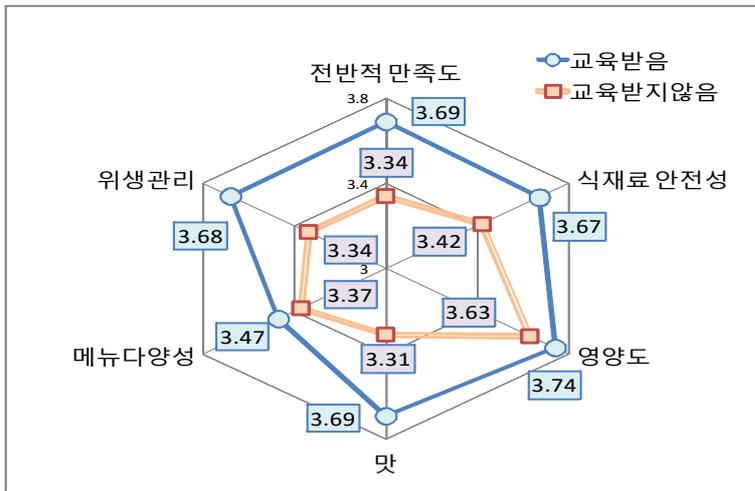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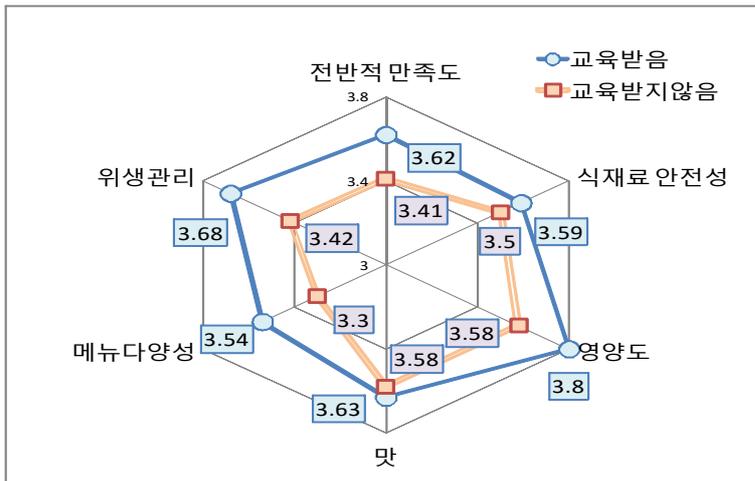


그림 7. 가정에서 먹거리 교육경험 여부와 급식 만족도



5)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위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

-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공적 조달체계의 확대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자본이 확충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지역먹거리체계(로컬푸드시스

템. local food system) 도입 및 확대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초기에는 생협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가 우리 사회에 도입되었고, 그 이후에 직매장, 농민장터(farmer's market), 꾸러미 등과 같은 로컬푸드의 실험적 사례들이 도입되면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가 확산되기 시작하였음
- 여기에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공적 조달체계가 도입, 확산되면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및 로컬푸드시스템이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기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
-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53개 광역 및 기초 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적 자본, 시설 인프라, 조직 및 기구, 예산 및 제도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빠르게 확충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생산-유통·물류-가공-소비 체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향후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급식 영역으로까지 공적 조달체계가 확장될 경우 생협과 급식을 비롯한 다양한 로컬푸드가 연계되면서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생태계가 우리 사회에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표 9. 서울시 공공급식 관련 실태조사 결과

| 분야 | | 시설수(개) | 1일 급식 인원(명) | 1식 평균 단가(원) | 담당부서 |
|--------|---------|--------|-------------|-------------|----------|
| 어린이집 | | 6,462 | 224,569 | 2,298 | 보육담당관 |
| 지역아동센터 | | 416 | 11,483 | 4,146 | 가족담당관 |
| 복지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 98 | 11,697 | 2,802 | 복지정책과 |
| | 노인종합복지관 | 36 | 11,371 | 2,424 | 어르신복지과 |
| | 장애인이용시설 | 321 | 23,171 | 2,473 | 장애인복지정책과 |
| | 장애인복지관 | 48 | 5,875 | 2,890 | 장애인자립지원과 |
| | 자활시설 | 42 | 7,216 | 2,310 | 자활지원과 |
| | 소 계 | 545 | 59,330 | 2,580 | |
| 합 계 | | 7,412 | 295,382 | | |

※ 자료 : 서울시, 공공급식 실태조사 (2016.3월)

※ 2015년 서울시 학교급식 : 급식인원 1,015,753명, 무상급식 인원 762,346명

표 10. 급식유형별 단체급식 이용자수 추정 (2010년 기준)

| 급식 유형 | | 1일 1끼 급식대상자(천명) | 급식끼니 | 특기사항 |
|----------------|-------------------|--------------------|--------|----------------------------|
| 계 | | 13,901 | | |
| 보육시설 | | 1,280 | 1식, 간식 | 종일반은 2식 제 공 |
| 유치원 | | 539 | 1식, 간식 | |
| 초·중·고 | | 7,179 | 1식 | 연 180일, 기숙사 학교는 2~3식 제공 |
| 사업체 | | 3,430 | 1식 | |
| 병원 | | 285 | 3식 | |
| 사회 복지 시설 | 저소득층 아동 돌봄센터 | 151 | 1식 | |
| | 사회복지 생활시설 | 166 | 3식 | |
| | 노인여가시설 (노인복지관) | 104 | 1식 | |
| 군대 | | 687 | 3식 | |
| 교정시설 | | 80 | 3식 | |

※ 자료 : 김혜련(2012)에서 인용

4. 친환경 무상급식의 미래지향적 가치와 의미

1) 먹거리 기본권(right to food) 보장

- 2004년 유엔(UN/FAO)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회원국에게 권고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2005년 유엔 인권위원회(UN/HRC)도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사를 천명하였음
- 소득의 양극화가 먹거리 양극화를 유발하여 건강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누구든지 안전한 먹거리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먹거리 기본권의 주요 내용임
- 또한, 유엔이 발표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²⁾ 구성하는 주요 분야의 하나로 지속가능한

2) 밀레니엄개발목표(2001~2015년)의 뒤를 이어 향후 15년(2016~2030) 동안 지구촌 개발협력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 것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다. 2015년 10월에 발표된 것으로 2030년까지 도달해야 할 목표와 과제를 새로운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먹거리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먹거리 기본권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급식정책에 관한 선진국의 보편적인 추세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먹거리 기본권(right to food)이라는 상위의 개념으로 수렴되고 있음

표 11. 급식정책에 관한 선진국의 보편적인 추세

| | |
|------------------|--|
| 결핍에서 균형으로 | 영양 결핍에 대한 대응에서 탈피하여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영양의 균형을 강조하는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음 |
| 시장에서 공공으로 |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 조달에서 탈피하여 급식의 공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적 조달로 변화하고 있음 |
| 자선(구호)에서 교육으로 |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적 지원에서 탈피하여 보편적인 교육과 급식의 연계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개 과정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급식정책에 관한 선진국의 보편적인 추세와 같은 맥락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소한 학교에서 먹는 한끼의 급식만이라도 학생들이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먹거리 기본권이라는 세계사적 흐름과도 부합하는 것임

2)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대

- 유엔은 2014년을 세계 중소 가족농업의 해로 선정했고, 2015년을 세계 흙의 해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모두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특히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강조하는 국제적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그동안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가 확대되는 것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생산-유통-물류-가공-소비 체계가 크게 확대되어 왔음

‘의제 2030 (2030 Agenda)’로도 불리는데,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8. 사례(1) 완주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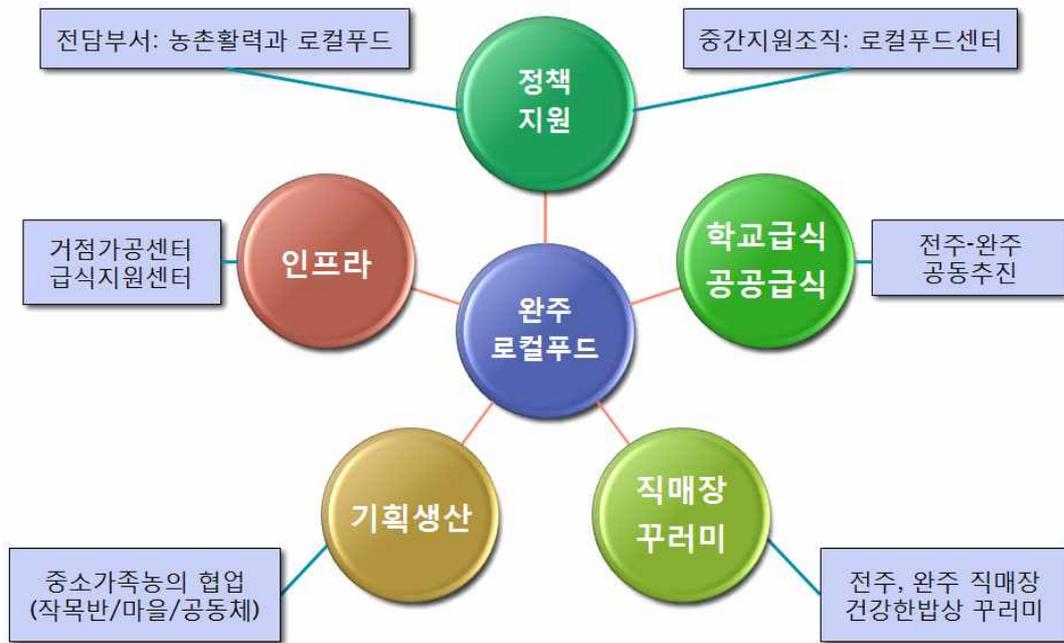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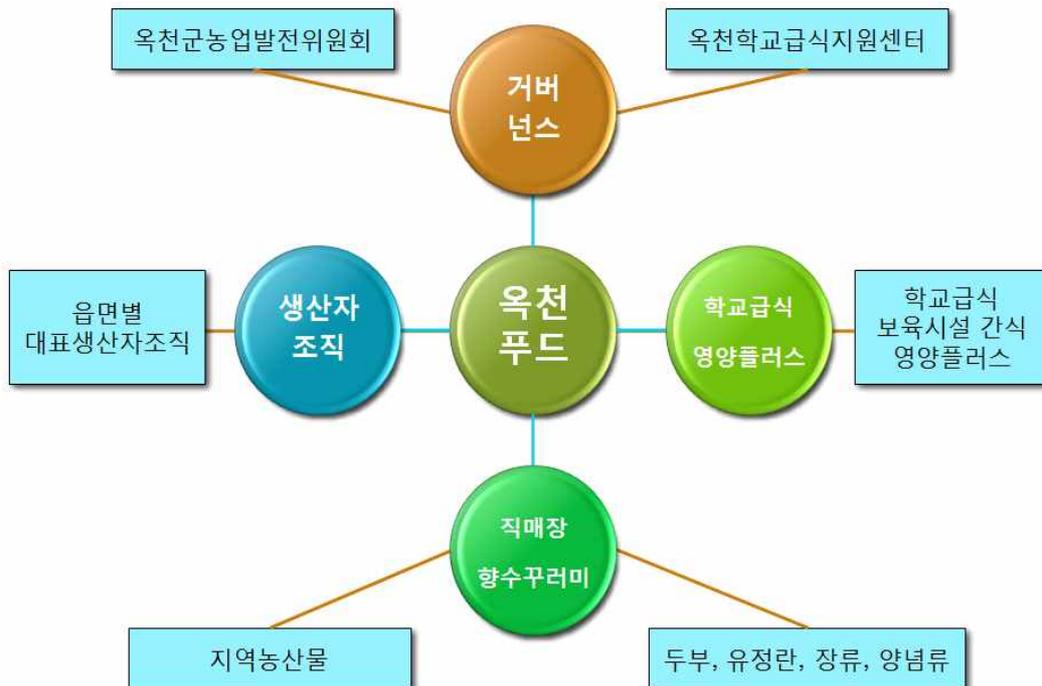


그림 8. 사례(2) 옥천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로컬푸드가 확산되는 것에는 학교급식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전국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부분의 로컬푸드는 학교급식을 중요한 구성요소로 하고 있음
-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공적 조달체계가 확대되면서 인적 자원, 시설 인프라, 조직 및 기구, 예산 및 제도 등과 사회적 자본이 확충되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로컬푸드와 같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3) 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

- 복지 체계의 시각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논쟁은 사회서비스 복지의 발전방향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은 종래의 선별적 복지에서 탈피하여 보편적 복지의 담론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복지이면서 동시에 의무교육의 일부이기 때문에 보편주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폭넓게 형성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음
- 따라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도입 및 확산은 선별적 복지라는 시혜적 차원의 복지 담론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과 확대할 수 있다는 실현가능성을 경험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음.
- 이에 따라 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시혜’라는 편협한 시각에서 탈피하여 공동체의 ‘권리’라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음. 또한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세금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는데, 보편적 복지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 및 누진적 조세부담의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음
- 비록 아직까지는 ‘선거용’이라는 틀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지만 복지 및 조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전향적 변화는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복지와 조세에 관한 전향적인 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

5. 친환경 무상급식의 발전을 제도개선 과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급식의 안전성 및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발전을 제약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제도적인 장치의 미비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따라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한 현안 과제임
- 이에 개인적인 의견이나마 학교급식법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주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1)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의무화

- 그동안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통해 빠르게 확대되어 왔으나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의 제약 때문에 친환경 무상급식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이 한계에 부딪친 상태임
- 따라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함
 - 대체로 중앙정부가 총 급식비의 50%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판단됨
-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이 의무화된다면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급식이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서 초·중·고·특수학교 등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임
-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으로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친환경 급식을 비롯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전반적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국공립 병원 등 다양한 공공급식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의무화를 통해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기반 확대, 로컬푸드를 비롯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의 기반 확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확대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 학교급식의 공공성·안전성·안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적 조달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임
-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변경함으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공공성·안전성·안정성을 높이도록 해야 함
 -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25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015년 기준 약 53개소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임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급식의 안전성 및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급식과 식생활교육의 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식재료의 공적 조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 조달에 필요한 인적 자본, 시설 인프라, 조직 및 기구, 예산 및 제도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생산-유통·물류-가공-소비 기반을 확대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조달계약의 특례

-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공적 조달체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조달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특례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구매 및 공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기업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수의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 한도의 상한선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사실상 식재료 생산자 및 공급자와 직거래, 계약재배, 계약생산 등을 할 수 없도록 제약하고 있음
 -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식재료 생산자 및 공급자와 직거래, 계약재배, 계약생산 등을 가능하도록 허용할 경우 식재료의 안전성 및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고, 공적 조달체계를 확대·정착시킬 수 있음
- 둘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구매 및 공급에 대해서는 현물지원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법률 근거를 명시하는 것임
 - 현행 학교급식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식재료 현물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물지원 여부에 대한 논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조달하는 경우 현물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명시함으로써 현물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기타 주요사항

- 첫째, 품질기준 및 조달기준 강화
 - 중앙정부의 식품위생 및 안전에 관한 제도장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청,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식재료의 품질기준 및 조달기준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방사능이나 GMO 등을 비롯하여 학부모 및 학생의 불안감을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학교급식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학부모의 참여 및 활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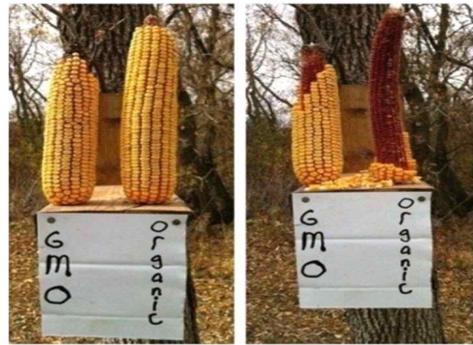
- 학교급식과 관련한 교육 및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일수록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결과를 볼 때 학부모의 참여 및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급식법에 반영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학부모의 참여 및 활동을 보장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교급식소위원회를 포함하여 학부모의 참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제발표문-2

왜 GMO 없는 학교급식인가?

1. GMO는 안전하지 않다.

일리노이 주의 한 농가에서 매년 50에이커의 콩 농사를 지어왔다. 근년에 철새와 기러기 떼의 습격으로 흉작을 면치 못했다. 그러다가 유전자 조작 콩을 반반씩 나누어서 심게 되었다. 그랬더니 이듬해부터는 GMO 종자 콩밭은 멀쩡한데 반하여 일반콩밭은 철새 기러기 떼의 공격이 여전하여 수확에 엄청난 차이가 났다. 기러기들은 GMO를 안다. 그동안 유전자조작생명체, 즉 GMO의 위해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1998년 스코틀랜드에서 푸스타이 박사가 실험실 쥐에게 GMO감자를 계속 먹이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면역체계가 손상되고 백혈구세포의 활동이 둔화되어 각종질병에 쉽게 감염되었다. GMO감자를 먹이지 않은 쥐에 비해서 두뇌발달이 더디고 간과 고환이 작아졌으며 췌장과 내장의 위축증과 퇴화증세가 나타났다. 그리고 암 발생이 현저히 증대 되었다. 이 같은 증상은 GMO감자를 먹이기 시작한 10일에서 110일 사이에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람의 수명을 적용할 경우 10년 전후의 청소년 기간에 해당한다. 이 사건으로 유럽 전역에서 유전자조작식품이 선반에서 치워졌다. 유니레버, 네슬레를 비롯한 식품회사와 맥도날드 버거킹 등에서 GMO 콩과 옥수수 등을 사용한 제품을 치워야 했다.

2010년 러시아에서도 실험실 쥐들에게 식용GMO를 계속 먹이자 3대째 종이 전멸하는 불임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2012년 프랑스 칸 대학에서 셀레라니 교수는 쥐에게 2년간 GMO 옥수수를 먹이는 실험을 했



다. 그 결과 장기손상, 뇌종양, 유방암, 신장과 간질환과 불임, 난임, 기형아의 발생등 암이 2배나 발생하고 암컷의 수명이 70% 단축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2. GMO는 농민들이 더 많은 제초제를 사용하게 만든다.

몬산토는 ‘GMO 종자를 사용하면 독성농약을 덜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3년간은 수확이 늘어난다. 그러나 5년 안에 내성이 강한 슈퍼잡초가 생겨서 제초제를 더 자주 더 많이 뿌려야 한다. 효과는 떨어지고 농약 값만 더욱 늘어나서 농가에 도움이 안 된다.

아르헨티나의 외진 산골 차코 주에서는 GMO 콩재배의 천국이 되었고 그 결과 아르헨티나 연간 수출액의 50%가 GMO콩이다. 차코에 GMO콩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 차코의 다섯 살 어린 소녀는 온몸에 검은 반점과 검은 털로 뒤덮여 눈 망물만 반짝이고 있다. 차코지방의 어린이와 주민들은 뇌성마비와 종양, 암등 신체 곳곳에 중증 장애와 질병을 호소하고 있다. 신생아의 30%가 기형아로 태어나 죽었다. 차코지방에 GMO콩을 심으면서 내성이 강한 슈퍼잡초와 슈퍼 곤충이 생겨나 더 많은 제초제와 살충제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땅과 강이 오염되어 모든 생물체와 인간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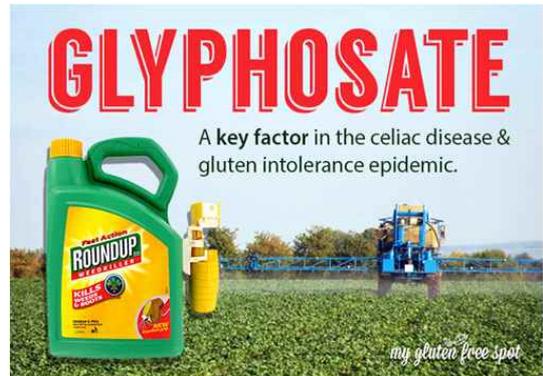
씨레질 대신 제초제로 미국의 농법이 바뀌고 있다.

우리는 봄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 트랙터로 로터리(씨레질)를 치지만 미국은 제초제를 치고 풀을 죽인 후 씨레질 없이 농사를 시작한다. 우리는 풀이 나면 친환경 농업은 콩밭을 메고, 일반 농사의 경우에도 작물이 없는 고랑사이에 제초제를 친다. 그러나 미국은 작물위에 GMO 전용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를 친다. 그러면 모든 풀이 다 죽고 GMO 콩과 GMO 옥수수만 살아남는다. GMO 농사를 함에 따라 제초제 사용량이 급증하였다.



3. GMO 전용 제초제가 발암물질로 판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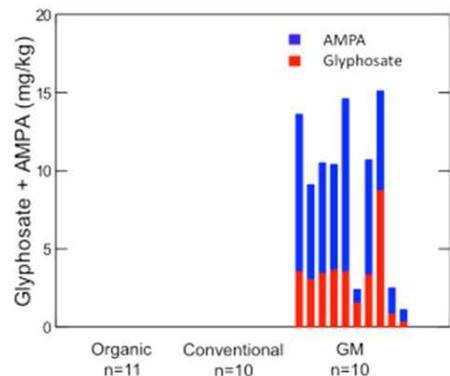
2015년 3월 아스피린만큼 안전하다던 글리포세이트가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발암물질2A 등급을 받았다. 글리포세이트는 GMO 작물과는 실과 바늘겨인 제초제이고 몬산토사의 대표적인 제초제 라운드업(Round Up)의 주성분이다. 라운드업은 불임증과 각종암,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IT의 스테파니 세네프 박사와 앤소니 삼셀 은 글리포세이트가 장 질환, 비만증, 당뇨병, 심장질환, 우울증, 자폐증, 불임증, 각종 암과 알zheimer 질병으로 나타난다고 2013년 발표하였다.



글리포세이트는 씻어도 씻기지 않는다.

국내 농산물은 농약을 사용하면 표면에 묻어 성장과정에서 분해되고 먹기 전에 씻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GMO 농산물은 GMO 전용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가 작물 체내에 침투하여 잔류한다. 따라서 씻어도 씻기지 않는다. 결국 GMO 작물에는 발암물질인 글리포세이트가 작물 체내에 잔존하게 된다.

우리정부는 몬산토사의 직원을 불러 해명을 듣고 주의 조치를 하였다고 한다. 그것이 전부였다. WHO의 국제암연구소 실험결과와 발표 전문을 받아보고, 다른 나라의 대응조치를 확인하고 자체 검사를 통하여 수입 작물에 글리포세이트가 얼마나 함유 되었는지 확인 했어야 한다.



GMO 콩에 든 글리포세이트 (노르웨이)

4. 피해야할 음식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음식들

GMO는 전 세계 경작면적의 10%가 넘는다. 그 중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전체의 76.3%를 생산한다. 품목으로는 콩과 옥수수, 면화, 카놀라, 파파야, 호박, 사탕무, 알팔파 등

이 있다. GMO의 나라 미국은 콩의 94%, 면화의 90%, 옥수수의 88%, 카놀라의 90%, 사탕무의 95%, 하와이산 파파야의 전부가 GMO다.

미국의 저명한 ‘책임지는 기술연구소(IRT) 소장 제프리 스미스 박사는 지난 20년 동안 글루텐 질병(과민성 알레르기)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 이는 GMO 식품 소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발표하였다. GMO콩과 옥수수를 함유한 GMO식품이 오늘날 2천만 명에 가까운 미국 사람들을 글루텐 병의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Bt 독소와 글리포세이트, 그리고 GMO의 다른 성분들이 글루텐 관련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2015년 2월17일자 내추럴뉴스닷컴은 미국의 밀농사에 몬산토사의 글리포세이트 라운드업 제초제가 지난 20년 동안 300%나 더 많이 살포됨에 따라 미국 어린이들의 소아만성 영양장애병인 소아지방변증(Celiac disease)이 거의 3배나 늘어났음을 보도하였다. 동계소맥의 61%, 춘계소맥의 97%, 그리고 99%의 마카로니 소맥의 수확 막바지에 라운드업 제초제가 집중 살포되어 그 잔류 독성이 최종 밀생산과 그 제품인 밀가루와 제과 빵류등에 남아 글리포세이트 유래의 대장질환과 자폐증 및 불임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미농무성 자료를 인용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1위 GMO 수입국, 세계 최하위 식량자립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은 23.4%로 최하위권이면서 GMO 곡물은 매년 1천만 톤 이상 수입하고 식용은 240만 톤으로 세계에서 1등으로 GMO를 많이 수입해서 먹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비량은 42kg이고 GMO 식재료(주로 옥수수와 콩, 카놀라유, 감자, 면화씨, 알팔파, 양식연어)등으로 만들어진 각종 외국산 가공식품과 첨가물(아스파탐, 프락토올리고당, 성장촉진제 등)의 수입량만도 별도로 120여만 톤에 달한다.

국내에서 제조 가공되는 약 7조 7천억 원의 가공식품의 원재료 7할 이상이 수입 산이며 그 8



할 이상이 GMO이다. 가히 우리나라는 GMO 천국이라 할만하다.

특히 GMO 작물 중 콩의 경우 콩나물과 두부,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등 우리는 콩을 주식으로 먹고 있다. 우리나라가 콩의 원산지인 만큼 콩을 다양하게 먹고 있어 더욱 직접 섭취량이 많다.

우리가 먹는 식용유는 미국과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콩 102만 톤의 94%가 GMO다. 그리고 참치 캔 속에 노랑게 들어있는 카놀라유도 94% GMO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치맥에도 GMO는 피할 수 없다. 콩기름 식용유로 요리한 닭과 어묵 등 튀긴 음식과 최근 독일산 맥주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 뉴스를 보았다. 제과제빵의 경화유등 식용유를 피해서는 요리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식용유의 용도는 다양해 졌다.

“콩 100%로 국내에서 직접 만든 콩기름”

마치 국내산으로 착각하게 만들지만 1200% 수입산 콩으로 만든 GMO 식용유다.



현재 수입되는 옥수수 104만 톤의 93%가 GMO다.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지는 액상과당과 물엿은 각종 가공식품의 단맛을 내는데 사용된다. 커피가게의 시럽과 아이들이 먹는 과자에는 거의 100% 들어간다.

5. GMO는 세계인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

뉴욕타임즈 4월13일자에는 “마침내 세계 GMO재배 면적이 2015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1996년 GMO가 상용화된 이후 급속하게 팽창 하던 면적이 줄기 시작했다. 주된 원인은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내추럴뉴스 닷컴〉 2015년 6월30일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GMO와 화학회사들에게 기업이윤 최대화를 위해 사람 건강과 환경을 파괴한다고 꾸짖다”라는 기사를 보도하여 바야흐로 세계 가톨릭 신자들은 물론 세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상업적인 과학기술이 환경생태계의 손상을 악화시키고 지구 기후패튼을 변동시키며 생명체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GMO 작물의 생산은 소농과 농업노동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환경생태계망을 붕괴하고 종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며 종자산업의 독과점으로 지역경제와 농가경제를 위축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프랑스정부는 몬산토사의 GMO옥수수 생산을 금지 조치하였다. 이탈리아와 폴란드, 러시아등도 GMO옥수수와 콩생산 반대 대열에 참가하였다. GMO는 현재 세계 38개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8개국에서 유전자조작 작물에 대해 일부분을 금지했다.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리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몰도바, 네덜란드, 북아일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스코틀랜드,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웨일즈

-남미 4개국에서 금지 :

벨리즈,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아시아 4개국이 금지

부탄, 키르기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아프리카의 2개국이 금지

알제리, 마다가스카르

특히 러시아의회는 GMO 생산자들을 환경과 인체를 해치는 “테러리스트”나 다름없다고 형사 고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녹색이 GMO금지국가
오렌지색은 GMO 허용국가

유럽연합은 최근 글리포세이트의 사용연장을 놓고 3차례의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15년간의 사용기한이 지난 6월30일로 만료되면서 새로운 15년간의 사용연장을 위한 논의가 진행 되었는데 유럽인들의 반대에 부딪쳐 향후 18개월 내에 글리포세이트가 안전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용연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현재 유럽연합에서는 글리포세이트의 사용이 중단되었다.

6. 주식을 GMO로 하는 나라는 없다

전 세계 64개국이 GMO를 금지하거나 표시를 강화해서 규제하는 가운데 농진청은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을 GMO로 만들어 상용화 하려고 하고 있다.

GMO의 나라 미국도 그들의 주식인 밀에 대해서는 GMO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주로 먹는 감자에 대해서도 식품업체들이 판매를 스스로 중단하고 있다.

왜 그들의 주식은 GMO를 승인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GMO가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미국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달 7월26일 아르헨티나 수입 밀에서 유전자조작이 적발되었다. 그리고 29일 미국 워싱턴 주에서도 유전자 조작밀이 발견되었다. 미국은 지구상 어디에도 유전자 조작 밀은 없다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품종은 미국의 일부지역에서 재배했다가 전량 폐기했다고 하는 품종이다. 씨를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것이 유전자 조작이다.

농진청의 주장대로 GMO쌀이 상용화 된다면 쌀이 전면 개방된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미국과 중국의 GMO 수입쌀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막을 명분이 없다. 또한, GMO벼의 꽃가루가 날려서 다른 벼들을 오염시킬 경우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우리 땅이 GMO로 한번 오염되면 조작된 유전정보가 계속 퍼져나가며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농진청은 쌀의 GMO상용화 입장을 철회하고 GM작물 실용화 재단을 해체해야 한다.

7. 한국과 미국은 GMO 완전표시제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4월 21일 식약처가 유전자 변형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시민사회는 들끓고 있다. 대부분의 수입 곡물이 GMO농산물이지만 식용유와 간장 등으로 가공되면 GMO 표시를 안 해도 되도록 하는 고시안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모든 식품에 대해 GMO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단서조항이다. 가공과정을 통해 단백질이 변형되거나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붙임으로서 대부분의 GMO수입 농산물에게 표시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표시되는 GMO식품보다 표시 되지 않는 GMO식품이 더 많아지니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

또한, 식약처는 생협과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는 GMO 프리존 실천매장운동에 대해서도 단속을 시행하여 금지시키고 있다. 식약처는 non-GMO 표시에 대해서도 비의도적 혼입율이 0%가 아니면 표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또한 식품대기업들의 주장이다. 자신들이 표시할 수 없는 것을 아무도 표시하지 못하게 하자는 의도가 숨어 있다.



한 살림과 아이쿱을 비롯한 생협들과 가톨릭농민회와 친환경농업인연합회등 농민단체, 경실련과 소시모등 시민단체와 식량닷컴 등 언론이 식약처의 GMO표시기준 개정고시안이 GMO 표시를 축소하는 방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미국은 지난 7월1일 버몬트 주에서 GMO의 의무표시제를 시행하였다. 코네티컷 주를 비롯한 5개주에서 의무표시제가 의회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등 서부의 농업지역에서는 몬산토의 천문학적인 광고에 힘입어 의무표시제가 무산되었다. 미국 내에서 주별로 치열하게 GMO표시제가 논쟁이 되자 몬산토는 작전을 바꿔서 GMO 의무표시제에서 GMO자발적 표시제를 입법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표시는 하되 주민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표시제 법안을 생각했다. 그것은 GMO를 표시하되 QR 코드(전자코드)로 표시도 가능하도록 열어놓는 것이다. 그리고 연방법을 넘어서서 주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오바마는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사람의 90%가 표시제를 지지하고 70%가 GMO를 반대하고 40%가 GMO 식품 구매를 기피한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8. GMO와 제초제 생산 회사들의 반격

미국의 차기 대통령후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은 GMO 기업을 옹호한 연설을 하는 대가로 몬산토와 다우케미컬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았다. 오바마도 몬산토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GMO의무 표시제법을 승인했다.

세계적으로 GMO가 배격되는 입장에 대해 몬산토와 제초제회사들은 GMO를 확산하는 새로

운 전략을 세웠다고 한다.

첫째, GMO와 제초제의 천적인 유기농업을 격파하라!

둘째, EU에 집중하던 노력을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중국으로 치중하라

셋째, 육종 및 영양, 소비분야의 관련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를 포섭하라 등으로 요약된다.

스텐포드대학에 5억 달러(5천억 원)의 용역비를 주었다. 그리고 ‘유기농업이 일반 관행농산물보다 영양가도 특별히 우수하지 않고 비용에 비해 안전성도 그리 월등하지 않다’는 식의 보고서를 받아냈다. 이결과를 세계 모든 언론에 널리 홍보했음은 물론이다.

외국계 대기업이 유리온실에 진출하고 한국의 종자회사를 인수한 몬산토가 종자를 생산하려고 한다. 유기농업이 엉터리라며 방송국이 집요하게 친환경 농업을 비판하고 한편으로는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고 GMO도 허용하는 GAP를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라며 전체 농산물의 50%까지 올리려고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각 국가인증 농식품에 대해 인증제도별로 분산된 소비자 인식을 전환시키고 국가인증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인증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통합로고(Logo)로 단일화” 하였다.

그런데 통합로고는 소비자들의 친환경과 GAP에 대한 혼동을 유발하고 있다.

〈 변경후 친환경 농산물과 GAP를 구분하기 어려움〉



이 모든 움직임이 GMO에 저항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응하여 몬산토가 자구책을 전개하는 것들과 맞아 떨어지고 있다.

9. 친환경 학교급식은 GMO의 천적이다.

친환경 학교급식이 시작되면서 식재료는 대부분 친환경이나 국내산으로 대체 되었다. GMO나 수입 산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그것에 대한 반발이 서울시의 친환경 급식을 부인하고 “농약과 과학이다”며 친환경 급식을 탄압했던 적도 있고 현재에도 저농약을 없애고 GAP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GAP(우수농산물 관리제도)로 번역하지만 실상 그 뜻은

GOOD이 양호한 농산물 관리제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고 일본과 중국은 양호한 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지자체는 GAP가 친환경 농산물과 같이 학교급식에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것이 결국은 수입농산물을 허용하고 나아가 GMO를 허용하려는 몬산토의 노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는 일차 농산물 식재료가 친환경 농산물인 것과 아울러 가공식재료 또한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원재료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아이들 식단의 절반가량은 가공식품으로 채워지고 있다. 그 가공식품은 튀김종류가 많고 원재료가 수입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대만이 학교급식에서 GMO 식품을 퇴출시킨 이유

대만의 경우 지난 2월 린슈펀이 이끄는 민진당 정부가 학교급식에 GMO작물이 포함된 어떤 식품도 어린 학생들에게 공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학교 위생법을 개정했다. 이 법을 통해서 GMO 가공식품을 학교급식에서 퇴출시키고 있다.

대만 학교위생법 23조 수정

○의안발의 이유: 유전자조작식품을 학교급식 및 (학교 내) 여러 형태의 공급 음식에서 전면 퇴출하여 학생의 건강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설명

1. 현재 초중등학교 급식이 보편화되어 다수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은 심지어 부분적으로 경제취약가정의 주요음식의 공급원이 되었다. 더욱이 일반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외식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학생이 검증할 수 없는 음식을 접촉하는 것을 대폭 낮추기 위한 것이다. 이에 급식은 우리나라 성장기 아이들의 매일 (섭취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 되었다.

2. 그러나 도대체 영양가 있는 급식을 먹는 것인가 사료를 먹는 것인가. 학교는 급식에서 각 영양소섭취량 및 여러 음식물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관리 통제하는데 치중하여, 유전자조작식품이 급식의 주요 식재가 된 것은 극히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가공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콩을 예로 들면 여러 형태의 (콩)완제품이 급식 메뉴를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 주부연맹환경보호재단의 통계는 초등학교급식 일주

일의 25가지 반찬 중 8가지가 두부제품으로, 예를 들어 사각두부, 미소 된장국, (콩가공물이 첨가된)생선 조림 등, 아이들이 거의 날마다 먹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매년 수입하는 230만 톤 콩 중 많게는 90%가 국외에서 사료로 쓰이는 유전자조작 콩으로서 수입 후 우리 국민의 주식이 되고 있다. 단체급식업자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 대다수 품질이 떨어지는 사료용 콩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있어서 발육기 아이들이 매일 유전자조작 식품을 먹게 만들면서도 달리 선택이 없는 상황이다.

3. 유전자조작식품 문제는 많다. 한편으로 유전자조작은 인체건강에 우려를 일으키고 있는데, 알레르거나 암에 걸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전자조작 시 제초제 저항 유전자를 삽입하기 때문에 더불어 농약잔류량을 과다하게 높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수입 콩의 경우 콩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잔류량의 기준치를 0.1ppm에서 10ppm까지 올렸다. 그러나 청대콩의 잔류량 허용치는 겨우 0.2ppm이다. 기타 콩과식물은 더더욱 검출되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유전자조작식품이 인체건강에 이미 지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감안하여 선진 국가는 모두 대비책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비록 유전자조작 수출 대국이지만, 현재까지 주요 식량인 밀에 유전자조작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유럽은 70% 민중이 유전자조작식품을 먹기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황을 돌아보면, 오랫동안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에 대해 무관심한 상황인데, 2010년 미국 위키 리스크가 심지어 "대만은 생명공학기술에 비교적 우호적이고, 유전자조작식품이라고 표시해도 개의치 않고 여전히 산다"고 폭로하기까지 할 정도여서, 가볍기 그지없이 처사하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

4. 학생은 국가 미래의 동량이다. 국가는 적절한 교육과 성장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급식이 이미 우리나라 아동 발육기의 가장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 되고, 심지어 기타 외식을 배제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급식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이에, 특별히 <학교위생법 제23조 조문 수정 초안>을 제출하여, 유전자조작식품을 학교급식 및 각종 공급 음식에서 전면 퇴출하여 아이들 건강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GMO 농산물의 안전성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아이들은 학교급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전적으로 배제해야한다는 명쾌한 논리를 보여 줬다. 학교급식에서 GMO를 퇴출 시켜도 국제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0.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GMO식품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하자

대만의 사례처럼 학교급식에서 GMO를 퇴출하기 위해서는 현행 학교급식법 16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식품위생법」 제 12조의 2 제1항에 다른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포함한 식재료
(추가삽입)

식품위생법의 개정 없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는 부족하다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도 학교급식의 가공식품 GMO는 막을 수 없다. 현행 식품위생법으로는 가공식품의 GMO포함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GMO의 완전표시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 김현권의원을 비롯한 37명의 국회의원들이 식약처 고시에 반대하며 GMO의 완전 표시제를 주장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정식으로 발의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의 개정과 학교급식법의 개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사안으로 묶여 있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핵심과제가 아닐 수 없다.

GMO를 극복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과 같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멀고도 험한 길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부터 지켜나가고 실현가능한 부분으로 점차 확대해가며 GMO없는 가공품 생산체계를 개선하고 점차 수입에 의존하는 축산 사료의 자급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좁은 땅이라는 단점이 지금은 GMO 없는 청정지역이라는 장점으로 바뀔 수 있다. GMO를 학교급식에 몰아내는 것은 진정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다”

주제발표문-3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을 통한 안전급식 방안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과제

- 충청남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

김오열(충청남도 광역급식지원센터 사무처장)

I. 서론

1. 문제의식
2. 배경 및 필요성
3. 학교급식지원센터 개념과 주요특징
4.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운영 흐름

II.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정책과 센터 운영 현황

1. 학교급식 지원정책방향과 주요사업
2. 충남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현황과 동향

III.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상의 성과와 문제점

1. 주요성과
2. 문제 및 애로점

IV.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확대를 위한 개선 과제

1. 학교급식법 개정
2. 지역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및 작부체계 구축
3. 식재료(특히, 공산품) 품질기준 마련 및 간소화·표준화 추진
4. 식재료 전일배송 사업 추진

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1. 문제의식

“지난 25일 시교육청 관계자와 학부모,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 해당 학교의 식재료 납품 가격이 다른 업체보다 비쌌고 유통기간 만료 시점이 근접돼 신선도가 떨어지는 식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봉산초 불량급식 관련 언론기사(2016. 7월)

“지난 2014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되기 시작한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결과, 친환경농산물 및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는 물론, 학교급식 영양교사 만족도 제고 등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관련 언론기사(2015. 8월)

대전 봉산초의 불량급식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학부모들의 건강한 학교급식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분노하며 현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됐다. 학부모들은 왜 거리로 나서서 불량학교급식을 개선해달라고 시위를 했을까?

이미 학교급식은 단순히 한 끼를 넘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돼있다. 각종 화학첨가물의 가공식품에 노출돼있는 학생들이 친구들과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움을 공유하는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소중한 학교급식이 저급하며 불량한 학교급식으로 전락했으니 학부모들이 나선 것이다.

반면 충청남도 홍성군의 학교급식은 달랐다. 2014년 3월부터 홍성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로컬푸드 농산물 등 전품목을 일괄적으로 모든 학교에 공급하면서 학생들의 영양만점은 물론 영양교사와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같은 학교급식을 하면서 상이한 운영이 왜 발생한 것일까? 급식을 하는 개별 학교의 담당자들의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관리감독의 문제인가? 지금처럼 대부분의 학교에서 민간업체에게 위탁하지 않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직영하는 체계에선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결국은 전반적인 학교급식 운영체계의 문제가 불량한 학교급식 발생의 근본 원인이다. 현재 제한적 최저가 입찰중심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는 이윤 중심의 시장논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각 학교별 학교급식 전문가인 영양교사·영양사가 있고 조리사가 배치되어 맛있게 조리함에도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로컬푸드 식재료를 공급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천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에서 당일 아침 모근 식재료를 꼼꼼이 검수·검품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운영되어 학부모들이 검수·검품에 참여하지만 미흡한 수준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렇다면 교육으로서 학교급식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만족하는

학교급식 운영체제는 불가능한 것일까? 출처를 알 수 없는 저급한 각종 가공식품들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이 한 끼 식사만이라도 건강하고 제대로 된 급식을 만들 수 없을까? 그 해결의 실마리들이 있다.

전국적으로 60여 시군에서 운영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문제해결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들을 학교에 공급하는 공공조달 운영체제로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운영체제를 공공성에 기반해 총괄 관리하는 기구이자 장치인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바람직한 운영체제 정립을 위해 충남에서 설립·운영중인 센터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배경 및 필요성

1) 친환경무상급식과 공익적 가치 확대

친환경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기업의 위탁급식이 아닌 학교 직영으로 급식의 질을 높이며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으로서 학교급식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이다. 여기에 신선하고 우수한 지역 농산물의 학교급식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농민·시민사회 요구도 계기가 되었다. 2010년 당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전체 초·중·고 학교의 23.7%인 2,657개교였는데 2014년에는 72.7%인 8,351개교로 확대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교의 94.1%, 중학교의 경우 76.3%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었다.

이처럼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는 학교급식이 식품산업의 시장 효율성 차원에서 제공되는 가격 위주의 학교급식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돌봄, 바른 성장이라는 다원적인 가치의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결과이다. 또한 아이들의 먹거리 기본권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가 강조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면에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환경과 배려, 신뢰의 사회적 가치를 배우는 교육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로컬푸드 확대와 얼굴이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농업·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 공적조달체제로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이러한 친환경무상급식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확대는 서구화된 학생들의 식습관으로 매년 4만 7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성인병을 앓고 있을 정도로 당뇨, 고지혈증 등 각종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한 학교급식을 만들자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기인한다. 이와 더불어 식재료의 안전성과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최근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품질 식재료 공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우수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로서 식재료 공적 조달체제는 일반 경쟁입찰을 통한 시중 조달 방식에 비해 안

전성 및 품질 관리에 장점이 있고,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적 조달체계의 확대는 학교급식의 안전성 및 품질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3) 충청남도 3농혁신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추진

충청남도는 2010년 민선5기 지방선거 공약으로 교육청간 무상급식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면지역 초등학교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중학교까지 확대했으며 2015년부터 지자체가 초중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전액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는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무상급식 분담을 총액기준 6(지자체) : 4(교육청)에서 식품비와 관리운영비로 변경한 이유는 각 학교에서 예산 보조금이 인건비와 운영비, 식품비와 함께 60%가 지원되기에 정산하기가 어렵고 지자체에서는 학교급식 식품비가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를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무상급식비의 분담방식 변경으로 친환경 등 지역산 우수농축산물 등이 학교급식에 현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셈이다. 학교급식 농산물의 현물공급은 제한적 최저가 입찰방식의 식재료 공급체계에서는 지역산 농산물 공급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는 2011년 도지사의 3농혁신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는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 3농 혁신의 핵심사업인 지역순환식품체계는 다국적 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세계화된 식품산업을 로컬푸드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순환의 식품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2016년까지 전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정책목표를 세웠지만 지역의 영양교사, 생산자, 관련 납품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되다보니 여러 갈등과 이해 상충이 발생하였다. 2016년 현재 8개 시군의 센터가 운영 중이고 2018년까지 14개 전 시군이 급식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3. 학교급식지원센터 개념과 주요 특징

2014년 교육부 학교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기 위해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에 대해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이다. 즉 단순히 학교급식 식재료의 물류센터로서 기능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친환경 로컬푸드 등 우수식재료의 생산 및 수급관리, 품목과 가격결정, 배송과 클레임관리, 위생안전관리, 교육과 홍보 등 전반적인 학교급식지원 총괄관리 기능으로 센터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산자와 가공업체, 유통물류업체들이 운영체계로서 학교급식지원센터 거버넌스의 운영에 어떻게 참여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 영양교사,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러한 학교급식과 관련한 총괄지원센터로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식재료 생산 및 수급 관리, 품목과 가격결정, 배송 등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한다는 점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본질적인 공익적·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익성·공공성에 바탕을 둔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장의 가격논리에 기반한 식재료의 수급관리는 지역 친환경 및 우수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없는 등 공공성에 기반한 급식센터 운영을 할 수 없다. 학교급식의 본질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식재료의 수급관리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위한 품질정립 등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가 친환경 로컬푸드인지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환경성, 지역성, 신뢰성, 건강성을 지닌 식재료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결국은 지역을 회복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 중 친환경 로컬푸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이고 생산지역이 상품의 특성에 따라 시군과 충남에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체계적인 생산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의 계획생산을 위한 작부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품질에 대한 공유와 식재료의 생산과 가공, 유통을 위한 시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는지도 중요하다.

셋째, 거버넌스 운영방식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품 등 수천가지의 품목이 운영위원회에서 품질기준에 따라 품목리스트를 정하고 그 품목의 가격을 기준가격과 비교 가격으로 검토해 협의과정을 거쳐 정한다. 이러한 식재료 품목리스트를 학교 영양교사가 식단에 따라 선정해 센터로 주문하면 센터는 학교로 물품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센터에서 식재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농산물의 생산, 가공, 가격결정, 수발주를 거쳐 학교로 안전하게 배송된다. 이러한 과정에 생산농민과 납품업체, 영양(교)사, 학부모 등의 관계가 형성되며 지역사회 교육이 행해진다. 이러한 관계를 제도화한 거버넌스 운영방식이 얼마나 잘 구축되고 투명하게 운영되며 학습과 조정으로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특징이 된다.

4.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운영 흐름(2015. 8월)

□ 자치단체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현황

- 광역센터 설치(2개) -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경기도는 설치 중
- 기초센터 설치(13개 시도, 64개)
 - 서울시(5개), 부산시(2개), 광주시(2개), 울산시(2개), 경기도(12개), 강원도(5개), 충청북도(1개), 충청남도(6개), 전라북도(8개), 전라남도(4개), 경상북도(13개), 경상남도(3개), 제주시(1개)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세종특별자치시는 미설치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유형

- 직영공급(12개 센터) : 지자체(산하 공기업 포함)가 식재료 공급·배송 직접 관리
- 민간위탁(37개 센터) : 위탁 법인이 식재료 공급·배송 관리
- 공급지원(10개 센터) : 센터가 각 학교에 일부 품목 공급업체 지정 또는 추천
- 행정지원(7개 센터) : 식재료 공급 이외 행정지원만 하는 경우

□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급품목 현황

- 전품목 공급(15개 센터) : 학교급식 식재료 전품목을 센터를 통해 수의계약 공급
- 농산물 등 일부품목(32개 센터) : 농산물 등 일부품목은 수의계약으로 센터가 공급하고, 나머지 식재료는 학교에서 입찰을 통해 기존 납품업체로부터 공급받음
- 공급업체 지정, 추천 또는 행정지원(17개 센터) : 쌀, 김치, 수산물 등 일부품목 업체선정, 추천

II.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정책과 센터 운영 현황

1.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정책방향과 주요사업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학교급식이 지닌 환경(생태), 건강, 공정, 배려의 본질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3농혁신의 바탕에서 공감대 형성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지역순환 먹거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정책방향

첫째,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으로 추진하는 무상급식의 정신에 기반을 둔 학교급식의 공익·공공 기능을 강화하여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장기 학생들이 차별 없이 누구나 연령에 맞는 고른 영양의 건강한 학교급식을 제공받도록 무상급식의 지속적 추진과 그 연결선으로 우수한 식재료의 공적 조달체계로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무상급식의 추진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체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로서 학교급식의 공적조달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체계 구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가격중심의 시장 공급체계가 갖는 문제점은 이미 각종 비리와 불량급식으로 이어져 받아들일 수 없는 체계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이다. 그런 면에서 학부모, 영양교사, 생산자, 납품업체, 지자체와 교육행정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협력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운영체계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이유이다.

셋째, 3농 혁신의 핵심 사업으로 소규모·영세농가의 안정적인 로컬푸드형 생산·유통조직을 육성한다는 점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공조달은 소량 다품목의 190일 연중 공급이라는 학교급식 특성을 반영해야 하기에 주산지 개념의 특화된 대규모 생산 유통으로는 적용되기 어렵다. 특히, 시장유통의 판로가 없는 영세 소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측면에서도 학교급식의 생산 유통조직을 육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2) 주요사업

이러한 학교급식 지원정책 방향에 근거한 주요사업들은 △ 초중학교 무상급식비와 유치원·고등·

특수학교의 친환경식품비 지원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지원 △ 친환경농산물 확대 공급체계 구축 △ 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 광역급식지원센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나누어진다.

〈표1〉 2016년 학교급식지원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 사업량 | 사업비 | 주요내용 |
|------------------------------|----------------------|------------------------------|--|
|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 초중 607개교 180,680명 | 139,459 / 65,664 (교육청) | - 사업비 분담 지자체(53%):교육청(47%) - 식품비(지자체), 인건비 등 운영비(교육청) - 지원단가 : 초등 2,010원 중등 2,510원 |
| 학교급식 친환경 식품비 지원 | 632개교 102,069명 | 9,130 | - 지원단가:유(390원), 고·특(500원) |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 1개교 | 208 | - 공주생명과학고 230명, 1식 3,100원 |
|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비 | 1식 | 18 | - 운영위 운영, 워크숍 등 역량강화 |
| 영양 식생활교재 제작 | 20천부 | 40 | - 로컬푸드, 영양, 식생활교육 |
| 수발주 시스템 유지관리 | 1식 | 22 | - 센터 운영시군 도 수발주 유지관리 |
| 수발주 시스템 확산 | 4시군 | 154 | - 4개 시군(서비스 운영환경 구축) |
| 학교센터 평가 및 지원체계구축 | 1식 | 100 | - 시군·광역 작부체계 구축 - 센터 컨설팅 및 관계자 역량강화 |
| 센터 운영활성화 지원 | 6시군 | 601 | - 센터 공공역할 수행, 경영안정도모 - 6개시군(천안,아산,당진,부여,청양,홍성) |
| 친환경 로컬푸드 학교급식데이 운영 | 400개교 | 400 | - 학교당 1백만원 정도 - 홍보전시·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
|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유통 전문조직 육성 | 10개소 | 1,000 | - 영세 소농 조직화 및 교육 - 농산물 보관, 선별, 유통 시설지원 |
| 로컬푸드 유통시스템구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지원) | 2~3개소 | 4,600 | - 서산,금산,서천,태안 중 심사결정 - 설명회 등 기반조성, 센터건립 등 |

(출처 : 2016년 충청남도 학교급식 전문가 워크숍 자료)

2. 충청남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현황과 동향

충청남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의 기본방향은 첫째, 시군의 지역적 상황에 적합한 공공형 운영방식과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행정이 주도하는 민관거버넌스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체계적인 생산관리, 공급품목과 가격관리, 효율적인 배송관리, 위생안전관리, 센터 운영수수료 관리 등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둘째, 벽지 소규모 학교와 대규모 학교가 동일한 품목과 동일한 가격에 일괄적인 배송체계를 갖기에 학생들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로 질 높은 건강한 학교급식을 제공받는다는 점이다. 셋째, 식재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적정한 가격에 학

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급식센터에서 식재료 품목의 간소화를 통해 품목별 단가경쟁으로 저렴하게 학교에 제공된다는 점이다. 다만 친환경 등 지역산 우수농산물의 경우 작부체계 구축 등 생산관리의 필요성으로 경쟁보다는 단체지정을 통한 수급관리를 택하고 있다. 넷째, 식생활교육 활성화, 건강식단 개발·보급, 가공품 품질기준 정립 및 공동구매 등 교육청과 영양교사·영양사 등과 협력·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1) 도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충청남도 광역급식지원센터는 민관거버넌스인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도 광역급식지원팀(행정)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행정이 주도하는 공공형 정책추진과 학교와의 협력체계 구축, 각종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해결을 위해선 도 행정체계에서 광역센터 업무추진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초기 센터 설립과 운영시 시군 적합 운영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체계 이지만 장기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상정립과 기능·역할의 확대를 위해선 광역급식지원센터의 독립 운영이 필요하다.

<표 2> 충청남도 광역급식지원센터 주요사업

| 사업명 | 사업내용 |
|-----------------------|---|
| 센터 위생안전 관리 강화 | -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월 1회 이상 실시 및 결과 통보 - 급식센터 및 배송차량 위생관리 및 배송기사 교육(월 1회) - 식중독 예방 센터·납품업체 지도점검(정기 : 연 2회, 6~10월 특별) |
| 센터 운영상황 분석 및 보완대책 추진 | - 전문 컨설팅기관(지역재단)에 위탁 센터별 보완대책 수립 - 천안, 공주센터 23개 품목 간소화, 품목별 입찰로 가격인하 - 전일배송, 식재료 표준화, 고등학교 참여 방안 등 추진 |
| 수발주 프로그램 구축 및 불편사항 보완 | - 도 개발 프로그램 사용 센터 : 천안, 공주, 논산, 당진 - 보령시, 예산군은 개발 완료, 정보 입력시 사용가능 - 기타 시군은 하반기에 구축하여 '17년도 보급계획 |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작부체계구축 | - 충남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 위탁 광역단위 작부 수립 중 - 8시군 친환경농업인 조직화 및 품목별 생산계획 수립 |
| 학부모 건강먹거리 지킴이단 운영 | - 발대식 (6.10 / 300명) 학부모, 농업인, 공무원, 영양교사, 센터 관계자 - 학교급식 정책설명, 역량강화 교육, 실천다짐대회 등 |
| 영양 식생활교육 확대 | -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하는 로컬푸드 학교급식데이 운영(400개교) - 식생활교육 교재 20천부, 교구 3천개 보급(176개교) |

(출처 : 2016년 충청남도 학교급식 전문가 워크숍 자료)

2)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현황

충청남도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14개 전시군(계룡은 논산센터로 통합)에 적합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있다. 물류시설로서 급식센터를 모두 설치하는 것이 아닌 물류시설의 위탁 등을 고려해 시군의 학생규모에 적합하게 추진하고 있다. 8개 센터(천안, 공주, 아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가 운영중이고 2개 시군(보령, 예산)이 '17년 개장 목표로 설립중이며, 4개시군(서산, 금산, 서천, 태안)이 '18년 개장 목표로 준비중이다 센터 유형으로는 행정직영형(홍성, 부여, 보령, 예산), 물류위탁형(천안, 공주, 논산, 아산), 통합위탁형(당진, 청양)으로 나뉘어진다.

행정직영형은 행정관리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유형으로 센터에서 학교에 제공하는 식재료 품목리스트를 작성하고 투명하고 적절한 가격을 결정하며 식재료를 공급할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학교와 직접 계약을 하고 학교 주문에 따라 배송업체를 통해 학교로 식재료를 납품한다.

이러한 자치단체 직영 모형의 장점은 첫째, 소비처인 학교 입장에서 식재료 공급관련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설립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와의 갈등 해소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용이하다. 둘째, 행정직영에 의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은 설립과 운영과정이 투명하여 절차적인 정당성 확보가 다른 운영 방식보다 좋기에 관리 운영 수수료가 낮다. 단점으로는 센터장인 공무원의 순환인사로 인해 장기 계획을 수립 운영하기가 쉽지 않고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점이며 특별회계 등 별도 회계절차를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외 행정인력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투입해야 한다.

통합위탁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행정 및 물류 기능을 모두 갖추기 힘들거나, 기반시설 및 기능이 확보된 위탁사업자를 통해 통합 위탁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 위탁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성 확보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장점으로는 학교급식에 적합한 위생과 안전성이 확보된 시설에서 농산물의 계약생산에서부터 수확, 소분, 전처리, 피킹, 배송을 일괄 관리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단점은 센터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공급업체의 선정 및 가격결정, 배송을 담당하기에 민간단체와 기존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관리운영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수수료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위탁사업자의 별도 사업(예 농협의 APC사업)과 독립된 회계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학교급식관계자의 불신을 높이며 갈등발생 요인이 된다.

물류위탁형은 공공성을 위한 행정관리기능은 행정에서 직접 하면서 수발주를 포함한 물류유통기능은 전문 위탁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이다. 행정 직영의 장점을 살리면서 물류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충유형이다. 장점으로는 공공성을 위한 가격 및 수수료 결정 등 총괄 정책결정은 행정 주도적으로 하기에 신뢰형성에 좋으나 단점으로는 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물류기능을 위탁받은 사업자에 대한 통제와 집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표 3. 충청남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8개 센터)〉

(천명, %, 백만원)

| 구 분 | 천안센터 | 공주센터 | 아산센터 | 당진센터 |
|--------|-----------|--------------|---------------|-------------------|
| 개 장 일 | ‘15.7(시범) | ‘16.4 | ‘13.3 | ‘11.3 |
| 센터유형 | 물류위탁 | 물류위탁 | 물류위탁 | 통합위탁 |
| 운영주체 | 농협조공(11) | 우성농협 | 아산조공(11) | 해나루조공(14) |
| 공급품목 | 전품목 | 전품목 | 농축산물 | 전품목 |
| 학교/학생수 | 111/67 | 42/8 | 84/45 | 88/20 |
| 인력현황 | 26(농협과견4) | 8(농협과견2) | 8(농협과견6) | 31(농협과견3) |
| 배송차량 | 93대(자체14) | 20(자체4) | 17(자체6) | 23(자체3) |
| 매출액 | 3,732 | 612(‘16상반기) | 14,126 | 13,265 |
| 수수료 | 10.9 | 12.5 | 9.1 | 14.2 |
| 친환경비율 | 61.6% | 45.6% | 66.3% | 56.1% |
| 지역산비율 | 63.6% | 78.6% | 51.3% | 79.0% |
| 작부구축 | 26농가 39품목 | 6농가 13품목 | 60농가40품목 | - |
| 특이사항 | 유통사업 흑자 | - | 행정 4명 현지근무 | 농협지원금 전처리, 육가공 |

| 구 분 | 논산센터 | 부여센터 | 청양센터 | 홍성센터 |
|--------|-------------------|----------------------------|----------|----------------------------|
| 개 장 일 | ‘16.3 | ‘15.5 | ‘14.3 | ‘14.3 |
| 센터유형 | 물류위탁 | 직영 | 통합위탁 | 직영 |
| 운영주체 | 논산계룡농협 | 부여군 | 유기농조합 | 홍성군 |
| 공급품목 | 전품목 | 전품목 | 전품목 | 전품목 |
| 학교/학생수 | 84/15 | 32/5 | 34/3 | 39/12 |
| 인력현황 | 8(농협과견2) | 행정2 | 7명 | 8(행정과견2) |
| 배송차량 | 18대(자체14) | 11대(위탁) | 4(자체3) | 12대(지입) |
| ‘15매출액 | 3,023(‘16상반기) | 3,200 | 2,069 | 7,386 |
| 수수료 | 10 | - | 9.5 | 8.5 |
| 친환경비율 | 57.4% | 63.6% | 44.0% | 64.9% |
| 지역산비율 | 56.2% | 66.0% | 75.5% | 54.8% |
| 작부구축 | 31농가 14품목 | 49농가 30품목 | 49농가29품목 | 36농가30품목 |
| 특이사항 | 운반급식 추진 | 행정:수발주, 정 책 업체:창고,배송 | 청양군 지원 | 행정:수발주, 정 책 위탁:창고,물류 |

(출처 : 2016년 충청남도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자료)

※예 - 충남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운영체계 구축 로드맵

| 업무흐름 | 추진일정 | 주요내용 |
|------------------------------|------------------------|--|
| <p>운영(추진)위원회 구성</p> | <p>최소 1년 전까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거버넌스로 센터 운영(추진)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필수 - 생산자단체, 시민단체, 영양(교)사회 참여 - 물품가격결정위원회, 생산자위원회 등 분과 구성 |
| <p>작부체계,공급체 계 구축</p> | <p>6개월 전 ~1년 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식재료 수급분석 및 공급 물품 선정 • 친환경농산물 작부체계 구축 • 식재료 공급체계(농수축산물, 가공품 등)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납품업체 참여 등 가공품 공급체계 |
| <p>신고·인허가</p> | <p>2개월 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소분 판매업 영업신고증 등 |
| <p>수발주시스템 교육·보완·구축</p> | <p>6개월 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수발주시스템 교육, 보완, 구축 • 시뮬레이션 실시 |
| <p>이해관계인 설명회, 간담회</p> | <p>6개월 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센터운영모델에 따른 추진계획 설명 • 공급·배송업체, 영양교사 대상 설명회 • 친환경생산자, 학부모, 시민단체 간담회 등 |
| <p>공급·배송업체 공모 선정, 계약</p> | <p>2개월 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재료 공급업체 공모선정·계약(농축산물, 가공품 등) • 배송업체 공모 선정·계약, 위생·안전 체계 마련 • 센터 수수료, 배송업체 수수료 등 결정 |
| <p>센터 이용 안내·홍보</p> | <p>3개월 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교육지원청 협조(학교장, 행정실장 센터 이용 안내) |
| <p>물류·배송 안전체계 점검</p> | <p>1개월 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센터 시설(저온저장 창고, 전처리 시설 등) 점검 • 각 학교 공급물품 점검 • 배송 차량 점검 및 시뮬레이션 실시 |
| <p>주문 확인, 식재료 확보</p> | <p>1개월 전~1주일 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학교의 식재료 물품 주문·확인 • 공급업체·생산자단체 물품 발주 • 검수검품, 배송차량, 클레임 대처 점검 |
| <p>센터 공급·배송 시작</p> | <p>당월~2개월</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검품, 공급·배송, 클레임 등 평가 (보완·발전방안 마련 등) |
| <p>센터 설치 이후</p> | <p>1~2개월 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학부모, 영양교사 대상 식생활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교육 제공(친환경농업, 농산물시식, 농촌견학 등) |

Ⅲ.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상의 성과와 문제점

1. 주요성과

1) 학교급식 식재료 공공조달체계 확립

- 14개 시군중 10시군 운영(센터 설립 8, 농산물 현물공급 2)
- 전체 1,235개교 277,078명중 74%인 817개교 204,559명 이용

공공형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식재료의 수급과 물류 공급체계가 학교규모나 벽지오지와 상관없이 동일한 품목에 동일가격으로 일괄공급하는 공공조달체계가 구축됐다. 각종 식품기업의 이윤 중심의 식재료 공급시장에서 공공조달을 통한 품질을 높이는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의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2) 지역산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의 사용 확대 및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6개 시군센터 기준) : '15년 63.8% ⇒ '16년 67%
- 작부체계 : '15년 4개 시군 94품목 372농가 ⇒ '16년 100개 품목 500농가 육성

친환경 로컬푸드 학교급식은 건강성과 환경성, 안전성과 지역성을 갖는 중요한 원칙으로 생산 농민과 영양교사, 학부모, 급식센터간의 유기적 협력과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에서는 시군 및 광역단위 작부체계 구축사업을 전문 생산자 단체에 위탁 추진하고 있다.

3)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공기능 강화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 전산수발주프로그램 보급 (6시군-천안, 공주, 논산, 당진, 보령, 예산)
- non GMO, 합성첨가물·방사능 금지, 친환경 로컬푸드 권장 등 품질기준 마련
- ※ 학교급식 정책 및 만족도 학부모조사 : 친환경급식 85.7%, 급식센터 필요성 82.6%

통합된 식재료 수발주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으로 품목별 간소화·표준화 추진이 가능해져 '16년 상반기 천안, 공주에서 23개 품목의 간소화를 통한 경쟁유도로 품질을 높이고 가격은 하락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15년에 마련된 지속가능한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기준에 적합한 식재료의 공동구매 등 최소한의 구매 기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4)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위생안전관리 강화

- 학부모 건강먹거리지킴이단 구성(8개 시군 157명)
- 급식센터 안전성검사 및 업체 점검, 교육 강화

학부모들의 주도적인 친환경농축산물, 가공품 등 품질기준에 적합한 건강먹거리 지킴이활동으로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는 주축으로 민간리더를 육성하고 있다. 이는 식재료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안정성 관리를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단초가 되고 있

다.

5) 로컬푸드 이해증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 식생활 교육 확대

- 로컬푸드 영양교육 교재 개발 및 제작 : 20,000부 충남 초·중·고등학교 배포
- 친환경로컬푸드 학교급식데이 행사 추진(300여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된 식생활교육은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면에서 학교급식은 교육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영양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만든 식생활교육 교재 제작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계절 농산물을 활용한 식단을 구성하고 학생들의 체험 행사로 학부모, 학생들의 친환경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활동이 확대됐다. 이는 학교 현장, 학부모, 학생, 생산농민 간의 신뢰형성 및 로컬푸드 공감대 형성의 단초가 되며 지역사회 건강먹거리 공동체 실현의 출발점이 된다.

2. 문제점 및 애로점

1)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인식차이

- 행정자치 : 공적기관(조직), 교육자치 : 납품업체

학교급식법 5조4항 및 지자체조례로서 지자체장이 설치·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적 기구이자 장치이지만 교육자치의 관계자인 교육행정 공무원이나 영양교사, 교장, 행정실장 등의 인식은 아직도 입찰 체계에서의 식재료 납품업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자체를 부정하고 기존의 식재료 납품업체와 더불어 또 다른 유통경로인 납품업체로 급식센터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업체의 주장을 옹호하는 경우가 많다. 각종 계약이나 업무협약시 센터의 지위를 업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로 인해 급식센터는 필요이상의 행정업무(계약, 가격결정, 배송, 위생점검 등)가 가중되고 식재료 품위기준에 대한 인식차이로 클레임 업무처리가 어려워진다.

2) 법적 지위와 계약문제

- 지계법 수의계약 금액기준 적용에 따른 업무 불편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교와 식재료 공급에 따른 계약체결시 지계법 9조1항에 따라 다른 물품의 구매와 마찬가지로 일반입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및 동법 시행령 25조 1항 3호에 따라 5천만원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계약은 학교급식법 5조의 지자체장 소속하에 설치 운영되고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공인된 절차와 심의를 거친 경우 금액에 상관없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1회 구매금액 기준으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이하는 2인 이상 복수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5천만 원 초과는 경쟁 입찰을 적용받는다.

① 직영운영의 경우 학교와의 계약은 지계법 시행령 제25조3항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을 근거로 금액, 기간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센터와 공급업체와의 계약시 지계법 수의계약의 금액기준 적용을 받는다.

홍성센터의 경우 식재료 납품 가능 지정업체에 의한 품목별 단가 경쟁입찰로 최저가 가격을 선정하고 협상에 의한 조정을 거쳐 최종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학교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품목별 단가경쟁이기에 5천만원이 넘지 않아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② 위탁운영의 경우는 학교와의 계약시 수의계약 1인견적 2천만원이하의 금액기준을 적용받아 계약업무의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진시와 천안시는 학교와의 현금계약 방식이 아닌 현물공급계약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자자체의 무상급식 식품비 보조금을 교육지원청을 통해 각 학교로 지급, 학교에서 센터로 정산하는 방식이 아닌 교육지원청이 지자체에 지불위임을 해 지자체에서 센터로 직접 무상급식 식품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각 학교에 현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 역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방식이어서 불편을 겪고 있다.

3) 지자체 정책으로 인한 재정과 인력의 제한

- 무상급식의 확대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한계

무상급식비와 친환경식품비 지원 등 학교급식 지원정책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로의 무상급식 확대에 한계를 갖고 있고 현행 초중학교 무상급식도 매년 의회에서 무상급식비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높다. 충청남도의 경우 '16년 761억원의 무상급식 식품비와 92억원의 친환경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1일 3식이 대부분인 고등학교의 경우 수익자 식품비 단가가 2,166원으로 무상급식 단가 2,510원 보다 344원이 낮다. 심지어 학교별로 1,700원에서 2,400원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1일 3식의 고등학교는 낮은 식품비로 저가의 가공식품 위주의 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채용 및 행정조직개편을 해야 하지만 정부 정책이 아닌 관계로 정부의 총액인건비와 행정정원제로 제약이 따라 업무추진을 용이하게 할 수 없는 실정이다.

4)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적정운영 구조와 적정 가격결정문제

- 운영적자 발생 및 품목별 적정가격에 대한 이해차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구조는 센터 이용 학교급식비 중 일정액 및 행정지원비인 수입과 센터 운영비, 인건비, 배송비, 수수료 등 제 경비인 지출로 이뤄진다. 수입은 지역별 규모의 차이가 있고 수익자부담인 고등학교가 식품비 단가의 차이로 급식센터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시군 센터별로 차이가 있다. 지출에서는 위탁운영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인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이러한 인건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센터 운영 수수료인상의 압박이 높다. 배송비용도 당일 배송으로 인한 절대적 비용지출이 있다. 이러한 운영구조에서 적정 가격 결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영양교사, 생산자, 업체, 센터 관계자들간의 이해 차이가 존재한다.

영양교사들의 품목별 학교공급 가격인상에 대한 견제, 납품업체(가공품 등)의 적정이윤 보장요

구, 농산물 생산자들의 생산비 등 적정가격 요구, 최소 급식센터 운영을 위한 수수료 책정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가격결정체계이다.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센터 운영의 적자를 해소하며 적정한 가격과 수수료를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하에 결정하는 합리적 방안이 요구된다.

<표 4> 2016년 3월 충남 적자운영 시군센터 사례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매출액 | 매출이익 | 지출액 | | | | 손익 | '16년 전망 |
|-----|-------|------|-----|-----|-----|-----|-----|------------|
| | | | 계 | 인건비 | 배송비 | 관리비 | | |
| A센터 | 3,485 | 378 | 280 | 80 | 140 | 60 | 98 | △22 |
| B센터 | 788 | 76 | 139 | 32 | 82 | 25 | △63 | △453 |

(출처 : 2016년 충청남도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자료)

IV.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확대를 위한 개선 과제

1. 학교급식법 개정 주요내용(안) - 우원식의원 대표발의안을 기초로 일부수정

| 현행 | 개정안 |
|---|--|
| <p>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좌동 2. “친환경무상급식”이란 제13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우리농수산물 등 우수하다고 인증한 식재료 식품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3. 좌동 4.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산물은 원양어업을 통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나. 지역 농수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 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수하다고 인증한 농수산물 다. 원료의 가공·유통과정에서 방부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화학첨가제 등 건강에 유해한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및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변질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
| <p>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p> <p>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 <p>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임무) ① --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을 식재료로 한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식품·식생활 교육을 통한 --</p> <p>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수산물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학교급식을 통한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학생건강권 보장을 위해 관련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p> |

| | |
|--|---|
| <p>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3.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p>제6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4. 좌 1~3항과 동일 |
| | <p>제8조(급식지원총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등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급식지원총괄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급식지원총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급식 지원정책 수립 및 조사·평가 2. 식재료 안정수급체계·관리계획 수립, 품목·단가결정에 관한 사항 3. 급식조달센터 지원 및 관리·감독 4. 식재료 수발주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지원 5. 식재료 품질기준 정립 및 조달지침 마련 6. 건강식단 마련과 식생활교육 지원·홍보 7. 학교급식 관련 위원회 및 교육청간 정책·업무 협의 8.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p>③ 급식지원총괄센터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9조(급식조달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등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계약, 생산·유통, 배송체계, 수발주 및 안전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급식조달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급식조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급식지원총괄센터에서 급식조달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시·도지사등은 급식조달센터의 유통·공급과 관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급식조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p> <p>⑤ 급식조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10조(계약의 특례) 급식조달센터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계약, 공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p> |

| | |
|---|--|
| <p>제8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p> <p>②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p> <p>③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 <p>제13조(급식에 관한 경비 부담)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 및 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p> <p>②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식품비의 100분의 50은 국가가 부담한다.</p> |
| | <p>제14조(식재료) ① 학교급식에는 급식조달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조달받은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학교급식에는 해당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그 밖에 식재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p> |

- 1) 급식지원총괄센터는 민관거버넌스 운영체계를 갖춘 총괄 컨트롤타워형 학교급식 지원센터로 공적조달체계의 안정화 및 확대에 기여
 - (운영조직) 시·도지사 소속 별도 사업소 또는 출자출연기관
 - (조직구성) 10명 내외(센터장 및 2팀 : 교육청3, 행정6, 민간4 등)
 - (주요기능) 시군 지원 및 조정, 관련기관 협의조정·융합, 공공성 강화 지원 등
 - (주요업무) 행정관리(친환경무상급식 관련업무, 유관업무 협의조정 등)
 - 식재료 수급 및 가격·위생·안전관리, 식교육 활성화 등
- 2) 급식조달센터는 급식지원총괄센터의 정책결정에 따른 계약과 수발주업무, 물류와 유통, 배송에 관한 업무를 수행
 - (운영조직) 시·도지사 소속 시설설치 또는 위탁운영
 - (조직구성) 10명 내외(센터장 및 2팀 : 생산·작부관리, 물류배송관리, 클레임 등)
 - (주요기능) 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작부관리, 물류배송관리, 클레임관리 등

3) 급식조달센터가 공인된 절차와 심의를 거친 센터인 경우 금액 상관없는 수의계약
 - 계약기간도 안전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주체이므로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고 작부 체계에 의한 계획생산(계약재배)를 위해서도 한 학기 이상 1년 정도의 계약기간 필요

4) 학교급식 식품비에 대해 국가가 50 지자체가 50을 부담하는 것은 학교급식의 공공적 가치 실현과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농업·농촌 활성화와 친환경우리농수산물 소비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임. 다만 현재 시도별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기준과 범위, 의무사항 등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유치원, 초중고 등급에 따른 국가적 식품비 적용기준을 별도 시행령 등을 통해 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급식비의 총액은 약4조 7~8천억원이며 이중 식품비는 약 2조 8천억원 정도임
- <표 5>를 보면, 무상급식비 평균단가는 초등학교에서 광주(2,548원), 대전(2,570원) 낮음 중학교는 인천, 대전은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부산이 950원으로 낮음.

<표 5> 2016 시도별 무상급식비 평균단가

(단위 : 원)

| | | 초 | | | | 중 | | | |
|---|----|-------|-------|-------|-------|-------|-------|-------|-------|
| | | 식품비 | 운영비 | 인건비 | 계 | 식품비 | 운영비 | 인건비 | 계 |
| 1 | 서울 | 2,537 | 72 | 1,085 | 3,694 | 3,050 | 272 | 1,266 | 4,588 |
| 2 | 부산 | 2,115 | 253 | 507 | 2,875 | 950 | - | - | 950 |
| | | 1,192 | 93 | 1,586 | 2,871 | 1,404 | 5 | 832 | 2,241 |
| | | 2,140 | 584 | 610 | 3,334 | - | - | - | 0 |
| | | 2,285 | 263 | - | 2,548 | 2,702 | 335 | - | 3,037 |
| | | 1,865 | 705 | - | 2,570 | - | - | - | 0 |
| | | 2,061 | 774 | 533 | 3,368 | 2,339 | 930 | 577 | 3,846 |
| | | 1,950 | 230 | 1,560 | 3,740 | 2,375 | 250 | 1,560 | 4,185 |
| | | | 3,223 | 967 | 4,190 | | 3,962 | 720 | 4,682 |
| | | 2,248 | 380 | 2,130 | 4,758 | 2,599 | 383 | 2,010 | 4,992 |
| | | 2,148 | 338 | 1,333 | 3,819 | 2,566 | 317 | 1,739 | 4,622 |
| | | 2,010 | 240 | 1,737 | 3,987 | 2,510 | 280 | 1,873 | 4,663 |
| | | 1,749 | 206 | 1,061 | 3,016 | 2,371 | 220 | 1,255 | 3,846 |
| | | 2,537 | 269 | - | 2,806 | 2,547 | 269 | - | 2,816 |
| | | 2,760 | 250 | - | 3,010 | 3,240 | 250 | - | 3,490 |
| | | 2,379 | 200 | 1,620 | 4,199 | 2,595 | 200 | 1,677 | 4,472 |
| | | 2,783 | 223 | 740 | 3,746 | 2,776 | 237 | 800 | 3,813 |

(출처 : 2016년도 교육청 내부자료)

2. 계약 관련 제도개선 과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고 공인된 절차와 심의를 거쳐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일반 식재료 납품업체와 동일한 지위로 지계법과 수의계약 운영 예규 적용을 받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

지계법 시행령 25조(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8항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목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적용해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금액제한 없는 수의계약 특례조항과 급식 식재료 조달관련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급식조달센터를 위탁 또는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 추가적으로

첫째, 공익성·공공성을 바탕으로 친환경·우수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는 급식센터로 교육청 및 학교와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한 신뢰형성이 중요함. 이를 위해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지원센터간의 센터 운영과 우수 식재료 공급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급식지원센터(특히, 위탁사업자의 경우)는 학교와 식재료 공급 계약 체결에 앞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센터 운영 전반을 위임 받았다는 위임장 또는 지정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각 학교에 친환경·우수 농축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센터를 통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예 - 당진시의 당진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위임장

당진군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위임장

- 위 임 자 : 당진군농협연합사업단(단장 이부원)
- 위임자 주소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지곡리 산267번지
- 위 임 기 간 : 2011.03.02 ~ 2014.03.01 (3년간)
(당진군농산물유통센터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기간)
- 위 임 내 용 : 당진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당진군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진군농산물유통센터 사용 및 관리에 당진군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당진군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을 위임합니다.

2011년 03월 02일

당진군수

※예-당진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방법) 2항 -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친환경 농축수산물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직접 지원한다.

※예-홍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방법) - 군수는 급식경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농축수산물 등을 공동조달에 의한 구매 방식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다.

3. 지역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및 작부체계 구축

우리나라 농업이 1980년대 상업농으로 전환되고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로 접어들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농산물 수급의 심한 불균형과 가격불안정이다. 이 때문에 계약재배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생산농가들은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판매처 확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급식에 친환경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위한 작부체계 구축은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체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급식센터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시군의 품목별 연간 수요량의 추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계약재배 물량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품목별 총 수요량의 적정량을 계약함으로써 수급량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년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량을 전수 조사하여 상위 소비량 품목부터 정리하고 월별 사용량도 파악해 품목별 작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중·하품에 대한 처리기준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농산물의 품질기준은 '상'품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셋째, 납품가능 품질등급기준이 생산자 및 영양(교)사에게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시군 관내 농축산물의 조사정보와 전국자료간의 편차가 심할 경우 계약단가 조정에 대해서는 센터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표 6〉 충남 생산자별 작부구축 예시

(○ : 파종 / △ : 정식 / ↔ : 수확)

| 지역 | 생산자 | 품목 | 면적(평) | | 2015년 생산계획 | | | | | | | | | | | |
|----|-----|------|-------|-------|------------|----|----|----|----|----|----|----|----|-----|-----|-----|
| | | | 시설 | 노지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금산 | 권용보 | 감자 | | 400 | | | | △ | | | ↔ | | | | | |
| 금산 | 김명준 | 고구마 | | 3,000 | | | | | △ | | | | | ↔ | | |
| 금산 | 최홍기 | 건고추) | | 500 | | ○ | | | △ | | | ↔ | ↔ | | | |
| 금산 | 권용보 | 깻잎 | 250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산 | 김향순 | 깻잎 | 2,700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 2015년 친환경농산물 작부체계 구축 사업보고서, 충남친농연)

3. 식재료(특히, 공산품) 품질기준 마련 및 간소화·표준화 추진.

학교급식 식재료의 최저가 입찰을 위한 품질 기준이 아닌, 지속가능한 식품체계에 적합한 사전 예방의 원칙에 맞는 품질기준을 정해 공공조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식습관 형성 및 미각 훈련이 이뤄지는 학교급식 특성에 따라 자연재료에서 얻어지는 건강한 입맛을 찾아 평생 건강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땅에서 재배한 우리 농산물을 원·부재료로 하고, 화학적 합성첨가물이 배제된 양질의 가공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 전문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지속가능한 품질기준 초안을 마련했으나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조례 개정과 영양교사, 학부모, 관련업체 등의 협력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기존 식재료 품목의 간소화,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품목 간소화, 표준화는 영양교사, 센터, 업체들간의 언어통일이며 경쟁유도 방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광역차원의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 교섭력을 높여 단가를 낮춰 각 센터에 공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표 7〉 충청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기준(가공품) 공통기준안

| | |
|------------------|--|
| 공 통 기 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원·부재료 우선 사용 (수급 필요시 국내산 사용) ② 유전자 변형(GMO) 농산물 및 원·부재료 사용 식품 제외 ③ 방사능 원·부재료 사용 식품 제외 ④ 쇼트닝·마가린, 시즈닝(합성조미료) 사용 금지 ⑤ HACCP인증, 전통식품인증 가공품 우선 사용 ⑥ 방부제, 화학색소, MSG(글루타민산나트륨)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합성첨가제 사용제한 |
|------------------|--|

4. 식재료 전일배송 사업 추진

식재료 전일배송의 필요성은 현재 학교급식이 당일 배송, 당일조리에 의한 급식체계로 운영되고 있기에 1대의 배송차량이 1일 3~4학교 밖에 배송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배송비가 상승하고 결국 적자 운영과 수수료 상승의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전일배송은 각 학교 클레임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처리(반품, 교환 등), 학교의 검수·검품시간을 오후시간으로 변경하여 여유 있고 꼼꼼함 검수·검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만 추진상 어려움은 센터 측면에서 전일근무 추가 인력확보 문제가 발생하고 학교에서는 식재료에 대한 위생안전상의 문제가 발생시 책임에 따른 부담감이 발생해 학교장 및 영양교사가 소극적이다. 하지만 각 학교의 냉동, 냉장시설에 온도시간기록장치(일명 타코메타)를 설치하고 전일 배송과 병행하는 코스를 개발해 시범 운영을 한 다음,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적용가능성이 높다.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2015년 차량 13대중 5대를 전일배송과 병행 실시해 연간 7천7백만원의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

V. 결 론

지속가능한 지역순환식품체계를 위한 친환경 로컬푸드 학교급식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행정주도의 거버넌스 운영체계를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행정주도의 민관거버넌스 운영체계가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를 형성하고 안정성을 높이며 학교급식 이해 관계자들 간의 신뢰를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한다.

지역농가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친환경 로컬푸드 운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학교급식을 통해 지역 중심의 새로운 먹거리 체계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먹거리 교육을 하며 지속가능한 식품체계를 만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활성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친환경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6년 현재 8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2018년까지 14개 모든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해 친환경 로컬푸드 학교급식체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학교급식의 식재료 공공조달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식품비를 국가부담을 50%로 해서 국가적 정책 추진의 기반을 삼고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약관련 업무를 해소해야 한다.

참고문헌

-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2015년 충청남도 학교급식 정책 방향, 「2015년 친환경 학교급식 워크숍」, 2014
- 충청남도 교육청, 「2016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2016
- 충청남도 교육청, 2016년 전국 시도 무상급식비 단가 현황, 2016
- 충청남도, 2016년 충청남도 학교급식 정책방향, 「2016년 학교급식 전문가 워크숍」, 2016
- 충청남도, 2015년 친환경농산물 작부체계 구축사업 보고서(충남친농연), 2015
- 김오열 (2015),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 충남지역 3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오열·김호 (2016. 2). 지자체 직영형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유기농업학회지, 24(1) 45-59

[토 론 1]

진헌극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대표)

[토 론 2]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